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2243(예산안), 제2244(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7년 11월 8일
4.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0일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8회계연도 세입 예산안 편성 개요**

-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06억 3백

만 원으로, 2017년 예산 대비 1,634억 5천 3백만 원(15.6%)이 증액된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규모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액(22조 6,731억 원)의 5.3%에 해당함.

〈표 1. 2018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8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
1,047,150	1,210,603	163,453	15.6%

## 나.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최근 5년간 변동추이

- 2018회계연도 세입이 전년대비 15.6% 증가(1,634억 5천 3백만 원 증액)된 데는, ‘국고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시도비반환금 수입’ 내역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의 증가는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양육수당’이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국비가 증가(전년대비 1,204억 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되어 오는 예산이 증가(전년대비 116 억원 증가)했기 때문임. 또한 시도비반환금의 경우, 자치구로부터 반환되는 예산이 크게 증가(전년대비 250억 원)한데 따른 것임.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은 세입규모는 7,881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65.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07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항목에 대한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6,421억 원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7,881억 원으로 1,459억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또한, 세입예산 가운데 ‘보조금’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의 경우, 2014년에 67.5%를 차지하던 것이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63%와 61.9%로 다소 감소해 가다가, 2017년 63.9%, 2018년 65.1%로 다시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한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에 대한 최근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6.4%와 36%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는 34.2%와 30.6%를 차지하면서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
  
- 이처럼 세입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매년 점차로 늘어가고, 대신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늘어나는 현상은,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절대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데 따른 것임.

<표 2.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2017년 대비 증감액	증감율 (%)
계	951,689	1,010,185	1,062,799	1,047,150	1,210,603	163,453	15.6%
	(100%)	100%	100%	100%	100%		
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7,271	6,065	22,322	19,937	51,751	31,814	159.6%
	(0.8%)	(0.6%)	(2.1%)	(1.9%)	(4.3%)		
경상적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2,113	383	557	123	134	11	8.9%
	(0.2%)	(0.0%)	(0.1%)	(0.0%)	(0.0%)		
공유재산임대료	2,113	383	557	123	134	11	8.9%
임시적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5,158	5,682	21,765	19,815	51,618	31,803	160.5%
	(0.5%)	(0.6%)	(2.0%)	(1.9%)	(4.3%)		
시도비반환금수입	4,406	4,709	19,661	17,252	42,270	<b>25,018</b>	<b>145.0%</b>
그외수입	752	973	2,103	2,562	2,649	87	3.4%
지난연도수입	-	-	-	-	6,698	6,698	100%
보조금 (전체대비 구성비율)	642,127	636,670	657,419	669,132	788,105	118,973	17.8%
	(67.5%)	(63.0%)	(61.9%)	(63.9%)	(65.1%)		
국고보조금	624,956	624,212	633,548	636,687	757,165	120,478	18.9%
기금	17,171	12,458	23,871	32,445	30,940	△1,505	-4.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대비 구성비율)	302,291	367,450	383,058	358,081	370,747	12,666	3.5%
	31.8%	36.4%	36.0%	34.2%	30.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92	1,225	1,733	1,956	2,964	1,008	51.5%
교육특별 회계잔입금	300,599	366,225	381,324	356,125	367,783	11,658	3.3%

## 다. 세부 항목별 검토의견

### 1) 과학적이고 면밀한 세입추계 필요

- 세입항목 중 전년대비 20% 이상의 증감율을 나타내는 항목은 ‘시도비반환금수입’ 항목(145% 증가)과 ‘지난년도 수입’(100% 증가) 항목,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1.5% 증가) 항목인 것으로 나타남.

〈표 3 . 20% 이상 증감율 기록한 세입 항목 현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안)			증감사유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	
여성가족정책실	시도비반환금수입	17,252	42,270	25,018	145%	연도별 변동폭이 커, 최근 징수액의 평균 등으로 산출
여성가족정책실	지난연도수입	0	6,698	6,698	100%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하던 지난연도 부과한 세입 중 체납분을 2018년부터는 부서별로 편성하여 징수
여성가족정책실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956	2,964	1,008	52%	연도별 변동폭이 커, 최근 징수액의 평균 등으로 산출

- 이 가운데 ‘시도비반환금수입’ 항목의 경우 그 예산규모면에서 전년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사유에 대하여 서술시는 “연도별 변동폭이 크다”는 입장을 제시함.

- 세입에 대한 면밀한 추계는 세출 예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선행의 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처럼 연도별 대규모의 예산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가 요구됨. 같은 맥락으로 ‘국고보조금사용 잔액’ 항목도 마찬가지임.
- 참고로,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대비 100% 증가한데는 세입 추계 상 그동안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편성·징수하도록 세입 처리 기준이 변경됨으로 새로 신설된 항목임.

## 2) 보육분야 시도비 반환금 규모 최소화 노력 및 예산운용 효율성 강화 필요

- ‘시·도비 반환수입’ 예산은 자치구 등에 기 집행된 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환을 예상한 세입 항목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에는 422억 원이 편성(전년대비 250억 원 증가)되었는데, 이는 2014년 44억 원이던 것이 지난 5년 동안 859%가 증가한 것임.
- ‘시도비반환비’의 증가 부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보육담당관 소관분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보육료’ 등 각종 국고보조 보육사업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반환금 규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

〈표 4 . ‘시·도비반환금수입’항목에 대한 부서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	2017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안			2년 연속 20%이상 증감한 사유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전년대비 증감율(%)		증감사유
여성정책담당관	108,798	137,232	28,434	26.1%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환금 수입을 적극적으로 편성	연도 별 징수액의 이 한 려움 연도 별 변동 추 계 가 어 수 폭 정 확 이 커 서 정 확 가 어
보육담당관	14,193,000	40,837,355	26,644,355	187.7%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환금 수입을 적극적으로 편성	해당없음
가족담당관	2,696,709	1,143,265	-1,553,444	-57.6%	2017년은 예산액 대비 수납액 실적이 크게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 예산은 다소 낮 게 잡음	2015년 신설 부서로서 납액을 예측하기 아 직 어 려 움
외국인문화담당관	253,655	152,500	- 101,155	-39.9%	글로벌빌리지센터 (7개 소) 임기제공 무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지출 증가로 집행잔액이 의 발생하지 않 을 예 정 이 라 서 낮 게 잡 음	연도 별 징수액의 이 한 려움 연도 별 변동 추 계 가 어 수 폭 정 확 이 커 서 정 확 가 어

○ 하지만, 이같은 시도비반환비의 가파른 상승폭은 같은 기간(2014년 대비 2018년)의 보육예산 규모의 증가폭(4.7% 증가, 2014년 1조 7,700억 원→ 2018년 1조 8,543억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보육분야의 시도비 반환 사유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것은 전년도 보육분야 세출예산이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뜻하고, 이는 결국 다음연도의 시도비 반환금 세입항목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을 거듭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세입·세출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출 예산의 편성·집행시 실수요보다 과다하게 집행하여 결국 세입예산으로 되돌아오는 비효율적 예산운영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과학적 산출과 집행이 필요해 보임.
  
- 참고로, 지난 2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시도비반환 세입 항목에 대한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매년 세입추계와 실제수납액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sup>1)</sup>, 지난 2017년 예산 추계 과정에서도 최근 2년간의 시도비반환금의 실제 수납액인 425억 원보다 ( ' 15년~ ' 16년 실제 수납액 평균액 425억 원) 상당히 낮은 수준인 141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여전히 과소 편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과 같이 세출예산상 효율적 집행 방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2017년 결산에서도 세입추계와 실수납액 간 차이가 여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임.
  
- 현재 대부분의 보육사업 예산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최종 집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에 서울시비를 보태어 일선의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 해당 사업비의 집행율은 100%의 완전한 집행 실적을 보이는 형태로 예산이 운용되는 것으로 기록됨.

1) 2015회계연도 및 2016회계연도 결산서 분석결과, 2015년 예산안 편성당시 시도비반환금을 47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시에는 472억원이 실제 수납됨. 또한 이어지는 2016년에도 예산추계시 196억 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378억이 실수납(징수결정액 428억 원)된 바 있음.

- 하지만, 이상에 살펴보았듯이, 예산이 실사업비보다 과다 집행되더라도, 세출상 사업항목으로 즉각적으로 반납 처리되지 아니하고,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시간소요 등으로 인해 세입 추계 상 ‘시도비반환비’로 처리됨으로써, 각 사업에 대한 명확한 집행실적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인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사업 운용에 대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 가.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은 2조 4,429억 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2조 2,177억 원 대비 10.2% 증액된 수준임.

〈표 5 .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8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x 669,132)	(x 788,105)	(x 118,973)	10.2%
2,217,743	2,442,968	225,225	

## 나. 최근 5년간 세출 예산 변동추이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31조 7,428억 원)의 7.7%에 해당하며, 이는 전년도(7.3%)에 비해 0.4% 가량 증가함.

<표 6. 최근 5년 간 서울시 총예산 및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 대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4	24,969,266	1,892,131	7.6%	0.1%
2015	26,513,778	2,099,712	7.9%	0.8%
2016	27,503,758	2,181,526	7.9%	0.3%
2017	29,652,475	2,176,902	7.3%	-0.02%
2018	31,742,874	2,442,968	7.7%	0.97%

※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서울시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최근 5년 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1조 3,341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2조 4,429억 원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1조 1,087억 원이 증가(1.83배 증가)함<sup>2)</sup>.

## 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구조

-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세출 구조는 99.7%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표 7.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예산안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
총 계	1,892,131	2,099,712	2,219,517	2,217,743	2,442,968	225,225	10.2%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1,888,903	2,097,014	2,213,184	2,213,345	2,436,865	223,520	10.1%
	99.83%	99.87%	99.71%	99.80%	99.75%		
행정운영경비	670	609	621	631	705	74	11.7%
	0.04%	0.03%	0.03%	0.03%	0.03%		
재무활동	2,558	2,089	5,712	3,767	5,398	1,631	43.3%
	0.14%	0.10%	0.26%	0.17%	0.22%		

- 2)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은 2012년과 2013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보육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부터 그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계층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그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임 (※ 2011년 9,355억원 => 2012년 1조 3,822억원 => 2013년 1조 8,777억원) 2012년 예산 대비 2018년 예산은 1조 1,087억원이 증가(1.83배)함.

## 라.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

- 서울시에서 제시한 여성가족정책실 2018회계연도 예산편성방향은, ‘①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 ‘②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제고’, ‘③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조성’, ‘④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이라는 크게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 아래 <표 8>와 같이 제시함.

<표 8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 방향 >

###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조성

- 성평등하고 여성폭력 없는 서울 구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품질제고

- 믿고 맡기는 보육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 향상
- 다양한 맞춤형보육, 함께 키우는 보육 활성화
- 아동학대 걱정없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조성

- 좋은 부모, 행복한 가족 만들기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들기
-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

### 글로벌 도시환경 조성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 외국인주민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 이주여성 취창업지원 등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책지원 및 인프라 확충조성

## 마.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 9>와 같음.

<표 9 .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총계	1,892,131	2,099,712	2,219,517	2,217,743	2,442,968	225,225	10.2%
	100%	100%	100%	100%	100%		
여성 정책 담당관	98,155	84,715	97,011	79,784	95,278	15,494	19.4%
	5.19%	4.03%	4.37%	3.60%	3.90%		
보육 담당관	1,770,091	1,774,044	1,892,006	1,888,814	1,854,349	-34,465	-1.8%
	93.55%	84.49%	85.24%	85.17%	75.91%		
가족 담당관	-	217,783	209,152	226,262	468,427	242,165	107.0 %
	0.00%	10.37%	9.42%	10.20%	19.17%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23,011	22,381	20,538	22,104	24,154	2,050	9.3%
	1.22%	1.07%	0.93%	1.00%	0.99%		
아동복 지센터	873	789	810	779	760	-19	-2.4%
	0.05%	0.04%	0.04%	0.04%	0.03%		

- 구체적으로,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75.9%(1조 8,5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예산규모를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담당관은 154억 원이 증가했고, 가족담당관은 2,421억 원이 증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20억 원이 증가 됨. 이에 반해 보육담당관은 344억 원이 감소 됨(아래 표 10 참조).
  
- 여성정책담당관의 예산규모가 전년에 비하여 증가한데는,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강화 예산 28억 원,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예산 31억 원, 스페이스 살림 건립추진 예산 87억 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며,
  
- 가족담당관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지원 2,221억 원,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42억 원, 아이돌보미사업운영 76억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지원 66억 원 등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보육담당관은 ‘가정양육수당’ 294억 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275억 원이 감소되면서 전체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됨.

-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에서 각 부서별 예산이 차지하는 상대적 예산 비중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여성정책담당관의 경우 2017년도에 3.6%였던 것이, 2018년에는 3.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보육담당관의 경우 연례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 규모의 87% 이상('14~'17년 4년간 평균)을 차지하던 비중이 2018년도에 75.9%로 줄어들었고, 대신에 가족담당관의 2018년 예산비중은 19.7%로 전년대비 8.9%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족담당관 소관의 아동수당지원을 위한 대규모의 예산(2,221억 원)이 2018년에 처음 편성 된 데 따른 것임.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정책사업 수는 총 175개로, 전년대비 15개 사업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남.
- 사업수의 주요 감소 사유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증감분에 따른 것임.

○ 각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아래 <표 10>과 같음.

<표 10.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개)

구분	'18 정책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
	총계	'17 대비			'17년 사업수	
		증	감	동일		
전체	175	102	53	20	190	
여성 정책 담당관	67	36	22	9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심귀가스카우트 6억,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강화 28억, 여성가족재단 운영 32억, 스페이스 살림 건립 88억</li> </ul> </li> <li>○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13억,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0억</li> </ul> </li> </ul>
보육 담당관	29	15	11	3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7억,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55억, 영유아 보육료(보조) 87억, 누리과정 보육료 89억, 우리동네친정엄마(시민참여) 9억,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9억</li> </ul> </li> <li>○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1억, 가정양육수당 지원 △295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75억</li> </ul> </li> </ul>
가족 담당관	52	34	16	2	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76억, 아동수당 지원 2,202억, 출산가정 축하용품 지원 43억, 아동친화도시 추진 8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7억,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시비) 8억,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지역아동센터운영 15억,</li> </ul> </li> <li>○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아동가족지원 △5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16억,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2억</li> </ul> </li> </ul>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24	16	3	5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센터 운영 7억,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특화사업 운영 10억,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지원(신규) 5억</li> </ul> </li> </ul>
아동복지센터	3	1	1	1	3	

## 바.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18회계연도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국고보조금 사업 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간의 예산 비율은 73.7% 대 26.3%로 나타남.
  
- 다시말해,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예산의 약 74% 가량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약 26%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아래 표 11 참조).
  
- 한편,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보면, 2018년 기준 총 175개 사업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79개이고, 순수 시비사업은 96개로 나타났음.

<표 11 .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개)

부서	국고보조 사업		순수 시비 사업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여성정책 담당관	42,330	33	52,948	34
보육담당관	1,420,563	13	433,786	16
가족담당관	326,238	30	142,189	22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11,917	2	12,237	22
아동복지센터	55	1	704	2
총계	1,801,103	79	641,864	96
전체예산 대비율(%)	73.7%	45.1%	26.3%	54.9%

## 사.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 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6개로 나타남.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보조)’ 사업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의 25.2%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이 11.4%,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상기 3개 사업은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예산 사업들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 예산의 7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실 총예산 대비율(%)
1	보육 담당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608,425	617,143	8,718	25.26
2	보육 담당관	누리과정 보육료	269,679	278,541	8,862	11.40
3	보육 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299,644	270,097	-29,548	11.06 (누계: 73.4%)
4	가족 담당관	아동수당 지원	0	220,210	220,210	9.01
5	보육 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보 육교직원 인건비	199,096	204,556	5,460	8.37
6	보육 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39,233	140,940	1,707	5.77
7	보육 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500	137,980	-27,520	5.65
8	보육 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육교직원 처우개선	138,508	136,416	-2,093	5.58
9	가족 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9,992	76,642	6,651	3.14
10	보육 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보 육교직원 처우개선	40,794	41,053	259	1.68
11	가족 담당관	지역아동센터운영지 원-지역아동센터운영	24,835	26,326	1,491	1.08
12	가족 담당관	아동급식지원	21,803	21,803	0	0.89
13	가족 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3,870	21,485	7,615	0.88
14	가족 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942	19,362	-1,580	0.79
15	여성정책 담당관	여성새로일하기센 터 지정운영	13,230	12,756	-474	0.52
16	여성정책 담당관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2,818	11,570	8,752	0.47 (누계: 91.5%)

## 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 1)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175의 세부사업(예산 2조 4,429억 원), 단지 12개의 성과지표만 사업수행 결과 측정
- 제한적 세부 성과지표문제 및 목표달성여부 측정지표의 미흡 개선 필요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 2018년 성과계획서 개요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조3)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토록 의무화함.

- 이러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3)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이런 점에서 보면, 성과계획과 예산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정책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편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175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지 12개의 성과지표만으로 사업수행 결과를 측정하고 있음.

  - 이러한 성과지표의 갯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여전히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대비 관련 세부성과지표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음.

  
- 또한, 성과관리 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해당 단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지표로 구성된 바, 이는 성과주의 예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표 13 .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정책사업 목표명	성과지표명 (단위)	17년			18년			18년 예산액 (백만원)
		목표치	지표 성격	성격	목표치	지표 성격	성격	
<b>총 정책사업 목표수 5개</b>	<b>총 지표수 12개</b>							2,442,968
1. 든든한 여성일자리 창출 충충한 여성안 전과 사각지대 없는 여성복지 실현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 의 성평등 문 화확산	1) 여성일자리 지원 (지원 수)	24,000	정 량	산 출	24,000	정 량	산 출	95,278
	2) 안심택배 점유 율(%)	56.5	정 량	산 출	56.5	정 량	산 출	
	성평등위원회 개 최(횟수)(건)	12	정 량	산 출	-	-	-	
	3)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선정수(건)	-	-	-	90	정 량	결 과	
2. 믿고 맡기 는 보육서비스 제공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 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개소)	300	정 량	산 출	250	정 량	결 과	1,854,349
	5) 보조교사 지원 (개소)	5,700	정 량	산 출	5,700	정 량	결 과	
	6) 안심보육 회계 컨설팅 운영(개소)	1,600	정 량	산 출	1,600	정 량	결 과	
3.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족 조성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7) 가족학교 교육 참여 인원수(인원 수)	14,000	정 량	산 출	14,000	정 량	산 출	468,427
	8) 아동학대 관련 시설 운영, 확충수 (시설수)	11	정 량	산 출	11	정 량	산 출	
	9) 아이돌봄 서비 스 제공(건수)	680,000	정 량	산 출	680,000	정 량	산 출	
4. 다문화가족 자립역량 강화 외국인의 일상 생활 편의증진	10) 다문화 취창업 교육 인원수(명)	1,250	정 량	산 출	1,040	정 량	산 출	24,154
	11) 글로벌센터 외 국인서비스 건수(건)	72,000	정 량	산 출	74,000	정 량	산 출	
5.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12) 아동상담건수 (건)	6.400	정 량	산 출	6.400	정 량	산 출	760

## ■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구체적으로, ‘튼튼한 여성일자리 창출 촘촘한 여성안전과 사각지대 없는 여성복지 실현 및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의 성평등 문화 확산’이라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① 여성일자리 지원수와 ② 안심택배 점유율과 ③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선정 건수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의 실효성을 가늠하려면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는 공급자 지원 횟수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실제로 ‘여성일자리 제공 또는 확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과위주의 지표로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제시된 성과지표는 ‘안심택배 점유율’로, 실제 택배함의 이용율이 56.5%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임. 그런데 실제 안심택배함 점유율이 안전한 복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라고 보기에 그 인과성 등 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한 다소 제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책사업 목표로 제시된 ‘시민이 참여하는 협치의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 또 다른 예로, 보육분야로 제시된 보육 관련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약 76%를 차지하고 그 규모만도 1조 8,543억 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이의 성과로 대표되는 성과지표는 단지 ‘①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2018년 예산 1,379억 원)’와 ‘②보조교사 지원 개소수(2018년 예산 323억 원)’ ‘③안심보육회계컨설팅 운영 개소수(2018년 2.35억 원4)’ 만으로 그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이는 상기 3개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는 1,704억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 현재 어린이집 운영의 80% 가량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시책사업이 운영·지원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제시된 성과지표는 매우 한정적 지표만으로 적용한 것이라 할 것임.
- ‘가족담당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체예산(4,684억 원) 규모 가운데 연간 100억 원 이상씩 차지하는 주요사업(‘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아동급식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예산과 관련된 측정지표는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고, 단지 ① 가족학교 교육참여 인원수, ② 아동학대 관련 시설수, ③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건수) 만이 제시되고 있음.

---

4) ‘안심보육 회계컨설팅 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는 서울시 예산 사업(1억 8천만원)으로 수행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관련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서울시(출연금)에 2억 3,500만원을 요청해 놓은 상황임

- 결과적으로, 금번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은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과지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정책사업 목표 달성여부의 구체적 지표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성과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예산의 형평성 문제 개선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각종 복지시설별 상이한 인건비 상승률 적용 문제 해소 필요
- 유사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형평성 강화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역아동복지센터 등 각종 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한 중앙차원의 임금체계 개선 필요

###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노력 개요

- 서울시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임금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같은 시기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sup>5)</sup>를 실시함.

5) 복지포인트의 구체적 내용은, 10년 이상 종사자에게는 연간 20만 원씩, 10년 미만 종사자에게는 연간 15만 원씩 지원하도록 함.

- 한편,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여성복지시설<sup>6)</sup> 종사자의 인건비는 그동안 복지본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에 비해 열악해 왔던바,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시키고, 2017년부터는 상기 여성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 대상자에도 포함시켜 그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함<sup>7)</sup>.

## ■ 유사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형평성 강화 필요

- 그런데, 문제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임금체계 일원화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실시하면서 그 적용대상을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에만 적용함으로써, 법정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되지 아니하나 실제 서울시에서 설립한 각종의 유사복지시설(예. 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통합센터)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에 따른 시설 종사자들 간 처우의 격차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옴(표 14 참조).

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21개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1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0개소), 이주여성 지원시설 (7개소)

7) 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을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도달 시 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2015년부터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80%, 2016년 90%, 2017년 95%, 금번 2018년 100%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해 옴.

- 하지만, 금번 2018년 예산편성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이외의 유사 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의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상의 논란은 2018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서울시립 차원의 다양한 여성·복지 시설이 확대되고 있고, 동 사업의 취지가 서울시 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시비 지원 사업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유사시설 간 처우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시설 종사자에게도 동일한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짐.

#### ■ 각종 복지시설별 상이한 인건비 상승률 적용 문제 해소 필요

- 한편,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각종 복지시설별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향율을 조사해 본 결과, 각 시설별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발견됨. (아래 표 14 참조).
- 이처럼 각종 사업별/시설별로 상이한 인건비 상승률이 적용되고, 이러한 추이가 장기적으로 지속 될 경우, 유사분야의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시설 간 인건비 격차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의 개선을 위해 유사분야의 각종 사업/시설별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엄밀히 조사·분석하여 임금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14. 각종 인건비 지원 시설별, 2018년 인건비 상승률 적용 현황>

순번	시설명	사회복지시설 여부	인건비 인상율(%)	인건비 인상 적용 근거	최저임금수준 준수 여부	서울생활임금 적용 여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포인트		
							적용여부 (미적용사유)	17년 예산액	17년 예산액
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	3%	물가상승률	○	○	미적용 (사회복지시설 아님)		
2	서울시 성평등 활동지원센터	×	68.9%	물가상승률	○	○	미적용		
3	여성발전센터 5개소	×	3%	물가상승률	○	○	미적용		
4	여성능력개발원	×	3%	물가상승률	준수	준수	미적용	-	-
5	여성공예센터	×	3%	호봉인상	준수	준수	미적용	-	-
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2.6%	여성가족부 가내시 기준('17.9.6.)	준수	미적용	미적용	-	-
7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	-			미대상	미적용	-	-
8	영보자애원	○	5.6%	보건 복지부 기준 적용	준수	적용	적용	17,300	17,000
9	여성보호센터	○	5.6%	보건 복지부 기준 적용	준수	적용	적용		
10	시립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	3%	물가상승률	준수	적용	적용	588	900
11	청소년건강센터	×	3%	물가상승률	준수	적용	적용	1,150	1,300
12	나자렛성가정공동체 외 20개소	○	15.3%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준수	적용	적용	18,900	18,300
13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3%	보육사업안내 및 물가상승률 반영	준수	적용	미적용		
14	서울상상나라	×	2.6%	2018년 서울시 만화타 인건비 편상준	준수	적용	미적용		
15	국공립 어린이집		2.6%		준수		해당없음		
16	서울형 어린이집		2.6%		준수		해당없음		
17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3%	'18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분 준용	준수	적용	미적용	-	-
18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25개소)	×	미정	(여성가족부 호봉기준표 미확정)	준수	'18년 적용	미적용(통합센터의 경우 지급)	19,850	19,850
19	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1,950	1,950
20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2,800	2,800
21	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1,750	1,750

22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1,750	1,750
23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2,200	2,200
24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2,000	2,000
25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	-	-	○	○	적용	2,100	2,100
26	학대피해아동쉼터	○	0	-	준수	준수	적용	292,270	343,090
27	꿈나무마을과란꿈터	○	4.28%	서울시지원	○	○	적용	55,100	55,100
28	꿈나무마을초록꿈터	○	4.28%	서울시지원					
29	꿈나무마을연두꿈터	○	4.28%	서울시지원					
30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4.28%	서울시지원					
31	서남아동상담치료센터	○	4.28%	서울시지원					
32	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4.28%	서울시지원			미적용		
33	남산원의 36개소	○	4.28%	서울시지원			적용	184,950	184,450
34	자랑아동가정상담원	○	4.28%						
35	가정위탁지원센터	○	4.28%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급가 이도인적용	준수	준수	적용		1,750
36	아동공동생활가정	○	3%	물가상승 률반영	준수	준수	적용	32,900	34,000
37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	-	-	준수	-	-	326,800	326,800
38	지역아동센터 426개소	○	5%	복지부지 침	준수	×	적용	164,050	165,669
39	한부모가족복 지시설 (25개소)	○	4.28	서울시사회 복지시설중 사자임금기 준적용	준수	준수	적용	19,450	19,850
40	서울시한부모 가족지원센터	×	3		준수	준수	미적용	-	-
41	서울글로벌센 터(생활지원)	×	3.0%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지급가 이도인적용	준수	준수	적용	2,850	3,050
42	서울글로벌센 터(비즈니스 지원)	×	4.4%	행자부 및 서울시의 자/출연기관 지침	준수	준수	-	-	-
43	동대문글로벌 센터	×	4.4%	행자부 및 서울시의 출자/출연 기관 지침	준수	준수	-	-	-
44	서남권글로벌 센터(생활지원)	×	3.0%	서울시사회복 지시설 중사 자 지급기준	준수	준수	적용	-	1,000
45	서남권글로벌 센터(교육지 원)	×	3.0%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준수	해당없 음	-	-	-
46	외국인근로자 센터 (6)	×	3.5%	서울시사회복 지시설 중사 자 인건비 지 급기준	준수	준수	적용	-	4,200
47	서울이주여성 상담센터	×	12.4%	생활임금 인 상을 적용	준수	준수	-	-	-

---

\*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역아동복지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한 중앙차원의 임금체계 개선 필요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각종 복지시설들의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은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을 따르고 있음. 하지만, 이들 시설들에 대한 별도의 종사자 임금테이블이 존재하지 않는 등 타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 체계가 낮은 편임.
- 이에 따라 서울시차원에서 2017년 기준 지역아동복지센터 종사자에게는 월 25만원씩,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게는 약 월 16.5만원씩(5년 미만자 13.5만 원, 5년 이상자 19만 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시설들의 인건비 체계가 워낙에 열악하여 유사 복지시설 종사자들과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므로, 이들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예. 시설별 종사자의 목표임금 수준 설정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설종사자의 임금 가이드 라인 마련과 호봉체계 도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바, 이의 개선을 위해 대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참고로, 금번 2018년 예산에는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당이 반영되었음.

<표 15.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별도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 반영 내역>

구 분	사업명	현 행	개 선
		2017년	2018년
기본사업 종 사 자	자치구 건강가정지원 센터 운영 지원	○ 종사자수당 - 5년미만 : 135천원/월 - 5년이상 : 190천원/월	○ 종사자수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준용 (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정액급식비) ※ 가족수당, 기말수당, 관리지수당은 '19년 반영 예정
별도사업 종 사 자	아이돌보미 사업	○ 지원 없음	○ 종사자수당 - 5년미만 : 250천원/월 - 5년이상 : 290천원/월
	공동육아나눔 터 운영지원	○ 지원 없음	○ 종사자수당 - 5년미만 : 250천원/월 - 5년이상 : 290천원/월
	가족학교 운영 지원	○ 지원 없음	○ 종사자수당 - 5년미만 : 250천원/월 - 5년이상 : 290천원/월
	취약위기 가족지원 사업	○ 지원 없음	○ 종사자수당 - 5년미만 : 250천원/월 - 5년이상 : 290천원/월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	○ 지원 없음	○ 종사자수당 - 5년미만 : 250천원/월 - 5년이상 : 290천원/월

### 3) 신규사업,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낮고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개선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사업목적과 부합성 낮은 세부사업의 문제 및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 문제 등 검토 필요
-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 예산사업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8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262억 6천 2백만원 임.
- 이들 7건의 사업 가운데 가족담당관 소관의 ‘아동수당 지원’ 사업과 ‘다함께 돌봄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것이며, 나머지 5건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것임.
- 신규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16>과 같음.

<표 16 . 2018년 신규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국비	도입배경 및 사업개요	사업 계획
합계			226,260	(X 129,565)		
1	가담관 족당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334,	-	○대상 : 세대별 1인가구 ○사업내용:세대별1인가구의사회적관계 망형성을위한복지사업 -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 램 지원,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지원 등	계수 예정 획립
2	가담관 족당	아동수당 지 원	220,210	(X 129,535)	○대상아동:소득수준무관0~5세아동 (전국: 2,534천명 / 서울시 대상아 동수: 429천명, 16.93%) ○지원기준:월10만원,현금지급원칙(고 향사랑상품권 등 가능) ○시행시기:'18년도하반기(7월이후~)	계수 예정 획립
3	가담관 족당	출산가정 출 산축하용품 지원	4,275	-	○사업기간:'18년7월이후~ ○지원대상:신청일현재서울시에주민등록 을두고거주하는모든출산가정 ○지원내용:10만원상당의출산축하용품 (또는바우처) ○신청및수령방법:동주민센터에서출생 신고시지원신청서제출/접수후배송(혹은 직접수령)	계수 예정 획립
4	가담관 족당	다함께 돌봄 사업	99	(X 29)	○사업대상:0~12세돌봄사각지대에있는아동 ○사업내용 -현행제도로대응하기어려운돌봄사각지 대와다양한돌봄수요에대응할수있도록, 지역공동체자원을활용한탄력적인형태 의지역돌봄생태계구축추진 -인건비3명,설치리모델리비1개소지원	수립 예정
5	외인문담관 국다화당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 선지원	500	-	○불법체류자자녀포함외국인및중도입 국자녀의교육환경개선등인도적지원을 통해다문화사회로의성공적이행및사회 통합구현,'외국인이살기좋은서울'조성 ○외국인자녀및중도입국자녀교육수요 증가에따른교육공간확보로교육의질제 고및공교육진입,한국사회정착지원 (보증금345,000천원,임차료120,000천 원,공사비35,000천원)	2018 년 1 월 사 방수 예정 업 립
6	외인문담관 국다화당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 문 멘토링서 비스 제공	350	-	○도입배경:결혼이민여성의출산후도움부재 ○사업개요 - 다문화전문 산후관리사 양성 및 파견을 통한 일자리 제공 - 출산여성과 가급적 동일한 국적의 여성을 매칭하여 산후조리부터 양육 지원 등 출산후 전반적인 과정 지원 통해 정서적 안정 및 회복 도움	2018 년 1 월 사 방수 예정 업 립
7	외인문담관 국다화당	다문화가족 시간제 돌봄 서 비스 제공	492	-	○서울시저출산종합대책수립추진계획 의일환인민관공동TF외국인다문화분과 발굴신규과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자교육시간 중센터내아이돌봄서비스제공,아이돌봄 경험있는결혼이민여성의근거리출근시 간제일자리제공	2018 년 1 월 사 방수 예정 업 립

## ■ 사업목적과 부합성 낮은 세부사업의 문제 및 기존사업과의 유사 중복 문제 등 검토 필요

-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의 경우, 1인 가구들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이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업 내용은 사업목적과의 부합성이 다소 떨어지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는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세부사업별 검토의견 참고).

## ■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8년 하반기(7월 이후)부터 지원하려는 국고보조 사업임.
  - 동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국고보조율은 50%로 여타의 국고보조 사업(예.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보조율 77%)과 비교해볼 때 매우 낮고, 이는 각종의 사회복지예산과 더불어 시 재정 부담이 가중 시킨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보편적 복지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해 보임.

**■ 예산사업으로 드러나지 않은 신규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 아래 <표 17>에 제시한 세부사업(통계목)은 신규예산 사업으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기존 사업 내 2018년에 새롭게 편성된 세부사업(통계목)들로, 이들 각 항목은 신규로 편성된 만큼 이들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표 17 . 2018년 신규편성 된 세부항목(통계목) 내역>

(단위: 천원)

연번	사업명	통계목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2017년 증감사유
1	여성능력개발원 운영강화	민간위탁 사업비	-	-	522,000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반영
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	8,000	세부사업 조정(보호시설 운영 `17년 → 1366센터지원 `18년)에 따른 증액(전년과 같음)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사회보장 적수혜금	-	-	11,700	사회복지사업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 변경
4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	-	61,0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가내시 반영
5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바라기센터 돌봄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지원(국비)	민간위탁 금	-	-	12,000	국비 가내시 반영
6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	사회복지 시설 법정	-	-	320,000	국비 가내시 반영

	바라기센터 돌봄 비용,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지원(국비)	운영비보조				
7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	50,000	데이트폭력 예방사업 신규 편성
8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운영비	-	-	183,712	기 구축 안심이 사업 유지보수비 신규편성
9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46,026	-	481,700	11개 자치구 안심이 확대 사업비 신규편성
10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민간경상사업보조	-	-	80,000	사업 확대편성
11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	-	8,681,639	관리기관 운영지원
12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	-	125,332	관리기관 운영지원
13	아동친화도시 추진	공공운영비	-	-	5,000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 변경(당초, 사무관리비)
14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	171,870	민간운영 '17년 0개소 → '18년 1개소 운영비
1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시비)	자치단체 자본보조	-	-	350,000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리모델링비 지원
1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	-	14,190	사회복지시설 평가(3년 주기, 복지부주관) 위원수당
17	외국인 지원시설 설치·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	-	60,720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노후시설 개선비
18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	90,000	2017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자치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단체에 재위탁 하는 등 당초 의도와 다르게 추진되어 2018년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변경

#### 4) 민간이전 경비 증가에 따른 철저한 성과관리 등 효율적 보조금 관리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 필요
- 이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민간이전경비 자원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 ■ 민간이전 경비 관련 예산 개요 및 현황

-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 “동일 사업에 지원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5년 전인 2014년 보다 661억 원이 증가하여 같은 기간 동안 1.4 배 가량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표 18 .최근 5년간 부서별 민간이전 경비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부서 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44,109,853	52,658,335	53,762,805	58,506,229	65,069,157	6,562,928	11.2%
보육 담당관	10,441,915	10,773,345	11,470,534	11,914,574	4,589,244	-7,325,330	-61.5%
가족 담당관	96,776,830	122,315,842	123,648,419	132,964,516	145,144,965	12,180,449	9.2%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17,835,973	26,432,159	17,178,473	17,946,900	20,536,043	2,589,143	14.4%
총액	169,164,571	212,179,681	206,060,231	221,332,219	235,339,409	14,007,190	6.3%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2018년 민간이전 경비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는 2,35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40억 원이 증가(증감율 6.3%)함. 이는 여성가족정책실 총 사업비 예산(2조 4,368억 원)대비 9.7%를 차지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 가운데 ‘아동수당’을 포함한 보육은 전체예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예산의 경우 직·간접적 형태로 수혜자에게 바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상기의 아동수당과 보육예산을 제외한 15%의 예산 가운데 9.7%가 민간이전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경비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 필요

- 여기에 덧붙여, 기초자치단체(자치구)를 거쳐 민간으로 배분되는 각종의 예산(예.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및 민간자본이전비 예산까지 더한다면 민간이전의 성격을 지닌 경비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고, 이 경비는 앞으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민간에 이전되는 경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서울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 평가를 통한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여 이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심의 시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 ■ 아동복지시설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민간이전경비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 아래 <표 19>는 민간이전경비의 형태로 집행되는 주요한 시보조금 사업들의 예시를 제시한 것임.

<표 19 .민간이전 경비 관련 주요 예산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예산사업명	2018 총예산	민간이전 경비 관련 예산		주요내용
		통계목	예산액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7,010,361	민간위탁금	5,574,161	여성발전센터(5개소) 운영비, 사업비 등
		민간위탁사업비	1,428,900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 공사
		소계	7,003,06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4,479,156	민간경상사업보조	4,466,656	인력개발센터(18개소) 운영비, 사업비 등
		소계	4,466,656	
노숙인시설 운영	5,262,399	민간위탁금	5,243,274	노숙인시설(2개소)운영비, 인건비 등
		소계	5,243,27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6,642,311	민간위탁금	15,225,660	아동보호시설 위탁운영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1,339,451	아동양육시설 등 38개소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33,000	차량구입비
		소계	76,598,11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860,32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788,735	복지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소계	7,788,735	
총계	101,256,570		101,099,837	

○ 2018년 예산 기준으로, 여성일자리 기관으로 대표되는 ‘여성발전센터(5곳)’과 ‘여성인력개발센터(18곳)’에 사업비 및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 민간이전경비로 집행되는 예산은 70억 원과 44억 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인

‘(여성)노숙인시설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52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765억 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77억 원으로, 이상의 민간경비만 합해 보더라도 총 1,101억 원에 이르고 있음.

- 하지만, 이들 시설 가운데, 시립으로 운영되는 여성발전센터와 노숙인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에 대한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되고 있고,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경비 가운데서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또는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시비보조금 형태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도 제외되고 있으며, 여타의 민간위탁 시설과는 다르게 계약관계상 서울시의 관여가 크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민간이전 경비가 지원되는 이들 시설에 대한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 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되어짐.
  
-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 된 서울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아동 성희롱 사건과 201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시비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례 등 보조금 횡령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들 시설을 민간위탁 시설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해 보임.

##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 운영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18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 85%가 '부적절' 의견
- 주민참여예산, 그 취지를 잃고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전락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징 및 한계 : 유사중복사업 문제 등 여전
-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 주민참여 예산 현황

- 201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16개 사업에서 총 26억 2,768만 원이 편성됨.
- 이는 전년도 참여예산(29개 사업, 20억 2,820만 원)과 비교해볼 때, 사업 갯수는 감소했으나 주민참여 예산 총 규모면에서는 5억 9,948만원이 증액된 것임.

<표 20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천원)

면역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부서 의견
	총계	16개 사업	2,627,680		
1	여성 정책 담당관	마을 속 성평등 학교 만들기(시민)	400,000	○사업대상: 중,고등학생 ○사업내용 -서울형성평등교육및활동지원 -서울형성평등심화교안및교육활동지침	적정 (주민참여예산 확보로)

		참여)		서개발및보급 -민-관-학연대를통한민관협의체운영	인한 기업 존 사업 예산 감액 조정)
2	여성 정책 담당관	시민의 눈 으로 성평등 정책 만들기 (시민참여)	300,000	○사업내용 -성인지마을공동체등분야별전문가자문단운영 -서울시및자치구풀뿌리네트워크구축및 운영 -성평등정책활동가양성및역량강화 -성평등관점으로서울시사업모니터링 -<성평등서울한마당>개최 ○추진방법:보조사업자선정후수행	적정 (주민참여 예산 확 보로 한 기존 사업 예산 감액 조정)
3	여성 정책 담당관	여성안심귀 갓길 조성 (시민참여)	20,000	○사업지역:우림시장오거리~망우로60 길23외8곳 ○사업내용 - 기존 보안등을 LED 보안등으로 일 괄 교체 - 귀갓길 시작과 끝 지점 노면에 '안 심귀갓길' 표시 - '여성안심귀갓길' 안내표시판 설치	자 치 구 선정사업 (※의견 없음)
4	여성 정책 담당관	폭력NO, 관 심YES 안전 한 세상 합 께 만들기 (시민참여)	25,000	○사업지역:서초구 ○사업내용 - 폭력의 통념에 대한 편견 깨기, 폭 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연극,영화를 통해 사회문화적인 상 황 속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 - 가정 내 훈육과 학대에 대한 차이 인식, 올바른 양육 기준 제시	자 치 구 선정사업 (※의견 없음)
5	보육 담당관	우리동네 친정 엄마(시민참여)	868,800	초보엄마와 기혼여성(우리동네 친정엄 마)를 연결, 육아와 살림 전반에 관한 노하우 전수	부적정
6	보육 담당관	내 손 안 장 난감(시민참여)	125,000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장난감 대여 서 비스 제공	부적정
7	보육 담당관	찾아가는 장 난감 대여 센터 운영 (시민참여)	75,000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장난감 대여 서 비스 제공	자 치 구 선정사업 (※의견 없음)
8	가족 담당관	우 · 아 · 함 지킴이 (우리 아이 를 함께 지 켜요)( 시민 참여)	120,000	○사업지역:동작구 ○사업대상 -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플래너 등 ○사업내용 -지역주민및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을대 상으로상담역량강화교육(가정폭력,성폭 력)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을 예방 -아동지킴이전문가양성과정등	부적정
9	가족 담당관	취약계층 아 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우리아이 마 음열기 사업 (시민참여)	300,000	○지원대상:취약계층아동 ○수행주체:강동구 ○추진방법:강동구에예산교부지행 ○주요내용:강동구내심리치료기관이용 하여음악,미술,놀이치료사를활용한심리 검사및심리치료비용지원	부적정

10	가족 담당관	지역 아동 센터 기능보강 사업(시민참여)	94,500	○사업대상:양천구내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 -교육용품, 생활용품, 급식용품 등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노후시설, 물품 등 환경 개선 사업	자 치 구 선정사업 (※의견 없음)
11	외 국 인 다 문 화 담당관	다 문화 가정 어린이 방문 학습 지도 (시민참여)	70,000	○2018주민참여예산시정참여형선정사업 ○다문화가정어린이들의 학습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학습 및 생활 지도	적 정
12	외 국 인 다 문 화 담당관	서울시 다문 화 가족과 함께 ~ 어우 러진 문화 (시민참여)	60,000	○도입배경:서울거주외국인주민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사업 프로그램 지원으로 시민(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추진 ○사업개요 -기간:2018.1~12월 -대상:서울거주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사업수행주체:3개자치구 -추진방법:공모 -내용:3개자치구별 문화 프로그램 실시(행사, 경연, 축제 등)	적 정 (기존 유 사중복사 사업: 외 국인 주 민커뮤니 티행사 지원)
13	외 국 인 다 문 화 담당관	다문화여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다문화 제과 제빵 강사 양 성(시민참여)	20,000	○ 시민참여예산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언어소통 및 문화차이 등 취업장벽으로 인한 취업을 저조한 결혼이민여성들의 사회참여활동 제공하여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자 치 구 선정사업 (※의견 없음)
14	외 국 인 다 문 화 담당관	다문화 체험 카페 운영 (시민참여)	39,380	○2018주민참여예산지역참여형선정사업(은평구) ○다문화카페공방및다문화음식체험의날 운영	자 치 구 선정사업 (※의견 없음)
15	외 국 인 다 문 화 담당관	외 국 인 주 민 및 다문화가 족과 소통하 는 일자리 지원사업(시 민참여)	50,000	○도입배경:시민참여예산사업선정 -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인력을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영등포, 구로구) 어린이집에 배치, 한국어가 서툰 아동의 생활을 지원하고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3~12월 - 지원대상: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 추진방법: 사업공모를 통해 수탁체 선정 후 민간위탁 예정	적 정
16	외 국 인 다 문 화 담당관	중도입국 청 소년을 위한 재한동포교 사 양성 및 재능 나눔 (시민참여)	60,000	○도입배경: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재한동포교사양성및재능나눔필요 ○사업개요 - 재한동포교사와 내국인 퇴직교사와의 연계를 통해 한국실정에 맞는 교수법 공유 등 재한동포교사 전문성 제고 -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을 위한 새로운 교안 개발 등 학습 지원 및 한국생활 적응 지원	적 정 (기존 유 사중복사 사업: 중 도청소 년 지원 기관)

○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시행 첫해인 `13년에 12.8억이 편성된 이후, `14년 16.5억 원, `15년 19.3억 원, `16년 8.5억 원, `17년 20.2억 원, `18년 26.2억 원이 편성되면서, `16년에 일시적으로 감액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매년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21 .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및 운영 추이>

(단위: 개, 천원)

부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여성정책담당관			4	340,000	2	70,000	4	517,000	5	921,600	4	745,000
보육담당관	2	250,000	3	760,000	10	1,335,000	5	296,000	3	120,000	3	1,068,800
가족담당관	4	888,000	2	80,000	5	316,000	3	26,000	3	57,000	3	514,5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150,000	4	470,000	7	214,000	1	15,000	18	929,600	6	299,380
합계	7	1,288,000	13	1,650,000	24	1,935,000	13	854,000	29	2,028,200	16	2,627,680

## ■ '18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해당부서 의견, 85%가 '부적절' 의견

- 아래 <표 22>는 주민참여예산 편성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부서별 의견서를 통계화 한 것임.
- 이 자료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은 연평균(3년간, '16년~'17년 ) 7.1% 사업만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일부 적절 포함할 경우 18.5%), 나머지 81.5%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연도별 '부적절' 의견은 '16년 70%에서, '17년에는 82%로 증가하였고, 금번 '18년 예산편성 사업은 88%가 '부적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8년의 경우 총 85건의 주민참여예산이 제안되었고, 이 가운데 10건(12%)만이 '적절' 의견을 받고, 나머지 75건(85%)는 '부적절'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상기의 '부적절' 의견의 대다수는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로 나타났고, 일부 사업들은 '운영비를 수반하는 계속사업 성격'이라는 사유로 파악됨.

<표 22 . 연도별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 현황>

(단위: 개)

구분	2016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				2017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				2018년 편성안에 대한 의견			
	적절	부적절	일부적절	소계	적절	부적절	일부적절	소계	적절	부적절	일부적절	소계
총계	35	170	39	244	0	205	46	251	10	75	0	85
	14%	70%	16%	100%	0%	82%	18%	100%	12%	88%	0%	100%
여성 정책 담당관	16	82	11	109		68	34	102	3	17	0	20
보육 담당관	7	33	4	44		19		19	1	26	0	27
가족 담당관	10	40	17	67		47		47	0	24	0	24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2	15	7	24		71	12	83	6	8	0	14

\*출처: 서울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 주민참여예산, 그 취지를 잃고 자치구 특별교부금의 또 다른 이름으로 전락

- 2018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확정된 총 16개 사업 가운데, 6건(37.5%)는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서울시로 올려 보낸 것으로, 2018년부터는 이처럼 자치구 선정사업의 경우 소관 실·국에서는 관련 부서의견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됨.
- 이에 기존의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그밖에 부적격 사유가 있더라도 실·국 차원에서는 무조건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임.
- 더욱이 자치구 요청사업의 상당수는 시설 개·보수 요구 및 자치구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궁극의 취지와는 그 부합성이 떨어지고, 이 경우 주민참여 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징 및 한계 : 유사중복사업 문제 등 여전

- `1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① 성평등 교육 및 정책 참여, ② 여성 및 아동 폭력 예방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③ 공동육아 인프라 구축 및 육아부담 경감 사업 ④ 취약계층 아동 심리치료서비스 지원 사업 ⑤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 ⑥ 다문화 체험 및 문화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지원 사업, ⑦ 다문화 가족 일자리 지원 사업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고, 이들 사업은 전반적으로 현재 일반예산으로 추진 중인 기존 사업과 매우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13년부터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의 문제 등의 지적과 보다 실효성 있는 계속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음.
- 그럼에도 금번 `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며,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들(예. 특정시설 기능보강비 사례 등)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 지난 5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이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행 6년차를 맞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효과성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서울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관리담당관을 통해 ‘사업목적 외 집행사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단순한 지도·감독 또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단순 관리 조치에 그친다고 할 것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시 행정에 참여하여 보다 현장중심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민참여방식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실효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주민의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얼마나 애초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잘 집행되고 의미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더 좋은 정책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실·국 단위의 사업평가 체계를 갖추고 평가결과가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6)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형식적인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 및 부적절한 성과목표 제시 개선 필요
-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 및 내실 운영 필요

### ■ 성인지 예산의 개요 및 현황

-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서, 예산이 성차별적으로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분석하고 자원 배분에 성 평등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36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sup>8)</sup>에 따라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성인지 예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금번 제출된 서울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대상사업은 총 272개이며, 예산안 규모는 2조 2,621억 원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사업이 239개 사업(2,262,214 백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사업은 24개 사업(106,947 백만원), 기금 사업은 9개(11,602 백만원)임.

8)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 23 . 서울시 성인지 예산 총괄표>

(단위: 개, 백만원, %.)

회계별	사업개수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율(%)
총계	272	2,262,214	1,846,841	415,372	22.49
일반회계	239	2,143,662	1,750,926	392,735	22.43
기타 특별회계	24	106,949	69,308	37,641	54.31
기금	9	11,602	26,606	-15,003	-56.39

- 이 가운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예산 사업수는 총 75개이며, 예산규모로는 1조 5,574억 원임.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5년전 인 2013년 당시 사업 수 33개, 예산액 1,538억 원 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표 24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인지 예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2018년	전년대비 증감	전년대비 증감율
총계	사업수	33	50	81	75	△6	△7.4%
	금액	153,894	385,828	1,274,527	1,557,418	282,891	22.25
일반회계	사업수	33	50	81	75	△6	△7.4%
	금액	153,894	385,828	1,274,527	1,557,418	282,891	22.25
기금	사업수	-	-	-	-	-	-
	금액	-	-	-	-	-	-

## ■ 형식적인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의 문제 및 부적절한 성과목표 제시 개선 필요

- 성인지 대상사업은 크게 ① 수혜자의 성별 분리가 가능한 사업과 ②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 사업과 같이 사업자체가 여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 수혜에 이르기까지 성별차이가 나타나는지 등을 고려해 봐야할 사업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산규모 및 집행실적으로 해당사업 및 정책에 대한 추진의지, 우선순위 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제시된 75개의 사업 대부분은 사업 자체에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후자에 해당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집행과 수혜 과정에서 성차별 구분의 의미가 크지 않다 할 것임.
- 다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의 성인지 사업들은 여성가족정책주무 실국임에도 성인지 사업대상으로서 부적절한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부적절한 성과목표 등을 제시하는 등 성인지 예산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됨.
- 이를테면, 금번 2018년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이 성인지 사업에 포함되었는데, 동 사업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성인지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듯이 동 사업의 수혜자는 “0세에서 만 5세까지

의 아동 전원에게 성별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로서 수행시 성별격차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임. 그럼에도 동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포함되고 있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임.

-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직업훈련교육(교육인원수)’와 ‘사회서비스 여성일자리 지원 수’로 설정하였으나, 동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성과목표를 취업률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그밖에도 제시된 보육관련 성인지 예산사업의 대부분은 그 성과목표가 단순히 해당사업의 집행율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 점검이 필요해 보임.

## ■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강화 및 내실 운영 필요

-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숫자와 예산액에 대한 절대적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곧 ‘예산이 성평등 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할 것인바, 현행과 같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 그 규모만 늘고, 그 내용은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 부서의 보다 강력하고 의지 있는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예산총괄 부서와 여성정책 부서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 성인지 예산 작성의 현실성 강화, 성과목표의 구체화, 성인지 예산담당자의 성인지 관점 강화, 예산사업설명서상 성별 예산산출 근거 제시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7) 저출산 대책 사업의 정책 효과성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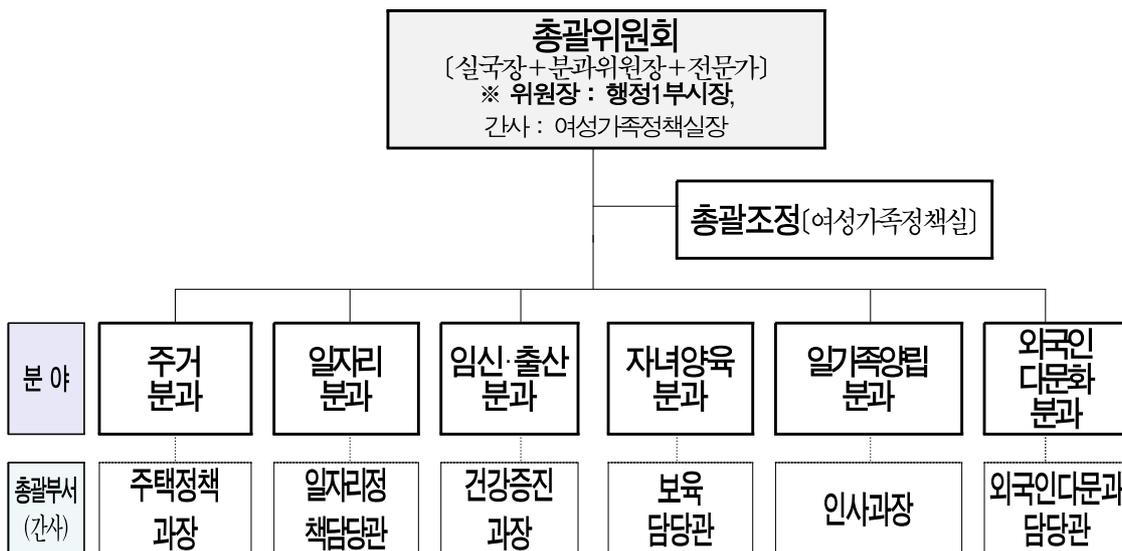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저출산 해소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 ■ 저출산 대책 추진 개요 및 추진체계

- 서울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7년 4월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시정 전반의 저출산 대응 과제를 발굴하고자 6개 분과(주거분과, 일자리분과, 임신·출산분과, 자녀양육분과, 일가족 양립분과, 외국인다문화분과)를 구성·운영함.

<표 25. 저출산 종합대책 T/F 운영체계>



○ 그 결과,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초 총 99개의 분야별 과제가 발굴되었고, 이후 조정위원회 검토(여성가족정책실장 주재, 총 45건 선정)와 최종 총괄위원회(제1부시장 주재) 검토를 통해 총 21건에 대한 664억 원이 예산과에 요청되었으나, 이 가운데 16건, 278억 원이 2018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됨 (별첨자료 2 : 2018 저출산 대응 과제 발굴 관련 사업 내역).

<표 26. 분과별 2018년 예산 편성 현황 >

◆ 주 거 : 2개 사업, 2,400백만원	◆ 자녀양육 : 1개 사업, 1,624백만원
◆ 일자리 : 3개 사업, 3,142백만원	◆ 알가족 양립 : 2개 사업, 1,213백만원
◆ 임신출산 : 4개 사업, 17,608백만원	◆ 외국인다문화 : 3개 사업, 1,342백만원
※ '18년도 예산안(예산담당관 조정 결과) : 16개 사업, 27,829백만원 편성	

○ 이 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은 총 7개 사업에서 73.3억 원이 편성되었고, 그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다음 <표 27>과 같음.

## ■ 저출산 해소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면밀한 사업 설계 필요

〈표 27. 저출산 대응과제 발굴 관련 사업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분과명	사업명	사업구분	통계목	예산액	주요내용
1	임신출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 산축하용품 지원	신규	사회보장적수혜금	4,275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육아 물품 지원
2	자녀양육	‘아이 함께 키워요’ 캠페인 진행	신규	사무관 리비	500	- 공익 광고 캠페인 및 공모전, 축제 진행 등으로 저출산 시대의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 구성원의 동참(양보) 유도
3	일가족양립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일가족양립 지원	신규	민간위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36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지원 ※ 매회 4시간씩 주1회 가사서비스를 지원(본인부담 5천원/회당 제외)
4	일가족양립	10대 청소년 한부모출산 및 양육 지원	신규	민간위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	877	- 10대 미혼모의 임신·출산을 위한 병원 진료·치료비 전액지원 - 영유아 자녀양육 10대 미혼모·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5	외국인다문화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	확대	민간경상보조금	500	- 중도입국 청소년 교육 담당 ‘서울온드림교육센터’ 교육공간 확충 - 중도입국 자녀 교육서비스지역 확대 및 권역화로 이용자 접근성 강화 - 학령기 이전 중도입국 유·아동 교육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 언어발달지도사 파견을 통한 중도입국자녀 학교 적응력 제고
6	외국인다문화	다문화가족출산 후 방문 멘토링 서비스 제공	신규	민간경상보조금	350	- 결혼이민여성의 산후조리부터 양육 지원 및 한국어 습득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감 해소
7	외국인다문화	다문화가족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신규	자치단체경상보조	492	- 다문화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족 동반자녀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주간별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통해 가족교육 및 전인적 영유아 발달 지원
총계					7,330	

-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그동안의 정부 대책에 대한 최근의 평가들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실효성 있게 작동 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상기 TF 추진을 통해 서울시 차원에서 실국간의 장벽을 허물고 저출산 문제를 전 시정 분야에 걸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사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됨.
- 다만, 이의 추진을 위해 금번 2018년 예산으로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산 해소와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제한된 재정상황과 정책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사업 계획이 필요해 보임.

## 8) 여성일자리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일자리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명칭 변경 필요
-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여성일자리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의 운영 내실화 필요
- ‘취업율’에 대한 개념 재규정을 통한 평가체계 다각화 필요,
- 일자리 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 여성일자리 기관 운영 및 예산 개요

- 서울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취업·창업 지원 기관으로, 시립 여성발전센터(5개소)와 여성인력개발센터(18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들 여성일자리기관의 총괄기관으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운영 중에 있음.
- 이들 기관들의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연평균(‘16~’18년) 150억 원에 이르고 있고, 금번 2018년 예산에도 총 1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표 28.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 운영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여성발전센터	5,608	5,825	6,031
여성인력개발센터	5,220	5,456	4,479
여성능력개발원	3,509	4,470	4,414
합계	14,337	15,751	14,924

※여성발전센터: 2018년도 태양광 설치 예산 971,600천원 제외

## ■ 여성일자리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으로서, 지난 25년간 여성들의 취·창업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위한 여성일자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할 것임.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면서 여성일자리 정책은 그렇다할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상황이 이러한테는 여성일자리 지원정책의 성과는 여성의 직업개발과 훈련만으로 완성 된다고 보다는 더 큰 사회·경제적 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은 보다 고도화되어가는 산업사회에서는 더욱더 복잡한 요인들과 결부되기 때문이라 할 것임. 이런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이제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방향은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개발’에 포인트를 두어왔던 방식과는 다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임.
- 특히, 제4차 산업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여성의 고학력화, 청년여성의 실업문제 등을 포괄하면서도, 기존의 경력단절 여성에 한정되어왔던 정책대상을 다양화하고, 각 대상별 욕구는 보다 세분화된 새로운 형태의 여성일자리정책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이는 곧 관내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운영방향과도 긴밀히 연결 된다 할 것인바, 여성일자리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협력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 ■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명칭 변경 필요

-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으로 우선적으로 여전히 여성을 ‘개발’과 ‘발전’ 대상으로 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며, 현행의 “여성인력 ‘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로 명명한 여성일자리 기관들의 명칭부터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임.

## ■ 여성능력개발원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필요

- 여성일자리 기관의 총괄·조정 역할을 하는 여성능력개발원이 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여성능력개발원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 오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인력과 예산이 수반 되어질 필요가 있음.

## ■ 여성일자리 기관에 맞는 프로그램으로의 운영 내실화 필요

- 한편, 일선의 여성일자리 기관들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요구됨. 교양강좌 프로그램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프로그램 구조를 개선하여 일자리 연계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실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심화 훈련·교육을 강화하는 등 여성일자리 기관으로서의 존립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됨.

- 그 밖에도 ■ **‘취업률’에 대한 개념 재규정을 통한 평가체계 다문화 필요**, ■ **일자리 기관 기능 강화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등 정책 개선이 요구됨

## 9) 보육료 현실화 등 중앙정부에 제도적 개선요구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표준보육비용 상향 조정 및 보육료 현실화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비 기준 상향조정 필요
- 차액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2016년 2,424억 원이었던 서울시 보육예산은 2017년 현재 1조 9,829억 원으로 증가함. 이는 지난 10년간 8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급증함.
- 제한된 예산 한계가 존재한 가운데, 이처럼 중앙정부차원의 막대한 보육( 및 사회복지)재정의 증가는 이를 의무적으로 매칭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위축시키고 의무 매칭 방식의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여타의 예산은 감소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보육분야라 할 것이며, 무상보육실시 이후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보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던 바,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 상생발전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를테면, ‘표준보육료비용 상향조정 및 보육료 현실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에 대한 국고지원비 기준 상향조정’, ‘차액보육료에 대한 중앙 지원 의무화’는 우선적으로 개선 될 과제로 보여 짐.

## ■ 표준보육비용 상향 조정 및 보육료 현실화 필요

- 보육비 지원 기준이 되는 ‘표준보육비용’은 중앙정부에서 결정되는데, 이 표준보육비용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임.
- 2013년 조사된 표준보육비용은 현실보다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어 대도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 보육료는 2013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됨으로써, 보육료로 운영되는 일선의 어린이집들의 운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이 16.4%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낮은 표준보육비용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댄질식 예산 지원만으로는 그 한계가 클 수밖에 없으므로, 보육료 인상 현실화를 위해서는 표준보육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덧붙여 보육료도 현실성 있게 인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되도록 그 기반 마련이 요구됨.
- 그 밖에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비 기준 상향조정이 필요’** 하며 ■ **‘차액보육료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필요’** 하다고 보여 짐 (※후술하는 사업별 검토의견 참조)

## 10) 불용을 과다 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불용을 과다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및 '18예산 편성액 적절성 검토 필요
- 불용을 과다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2017년 신규로 편성된 불용을 높은 국비사업에 대한 수요-집행관리 필요

### ■ 불용을 과다 사업에 대한 불용사유 및 '18예산 편성액 적절성 검토 필요

- 아래 <표 29>은 예산 사업별 2017년 10월 말 현재 불용(불용율 20% 이상) 현황을 정리한 것으로, 이들 사업의 불용사유의 타당성 및 2018년 예산편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표 29 . 불용율 20% 이상 사업 내역 (2017년 10월 말 현재) >

(단위 : 천원)

사업명	2017년 (10월말 현재)					2018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불용사유	예산액	잔액비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 (국비)	2,648	0	2,648	100.0%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설을 심사 중에 있으며 11월 집행예정	156,938	5826.7%
건강한 청년 성 문화 조성(주민 참여)	8,600	0	8,600	100.0%	11월에 준공완료 후 지급	-	-100.0%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000	0	20,000	100.0%	시기 미도래	20,000	0.0%
문화통합 프로그램 '다같이 놀자' 프로젝트	300,000	0	300,000	100.0%	기추진중인공모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 사업으로 불용예정	-	-100.0%
서울 디딤플라자(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180,000	0	180,000	100.0%	디딤플라자 건립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	-	-100.0%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시행					의논의지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실시 불가(명시 이월 예정)		
다양한 엄마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주민참여)	100,000	3,000	97,000	97.0%	10월 선정위원회 개최 후 11월에 사업비 집행 예정	-	-100.0%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260,000	14,000	246,000	94.6%	시기미도래(센터 운영 예산 11월 집행 예정)	674,090	159.3%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우수 지역아동센터(국비)	969,120	62,400	906,720	93.6%	4분기 집행예정	967,680	-0.1%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국비)	797,270	128,706	668,564	83.9%	4분기집행예정(4분기설치완료)	514,960	-35.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2,227,657	360,986	1,866,671	83.8%	4분기집행예정(4분기공사완료)	213,750	-90.4%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135,000	25,026	109,974	81.5%	12월 집행예정	-	-100.0%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067,886	513,607	1,554,279	75.2%	시범사업후 결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7월에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9월 발주하여 연내 집행 예정	1,912,602	-7.5%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4,320,500	1,178,795	3,141,705	72.7%	건립공정일정에 따라공사및감리용역 1차계약이2018년에 완료됨에 따라 선금금(약 7.6억)은 올해 내 추가 집행예정이나 준공금 등은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예정임	11,570,200	167.8%
복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6,060,508	1,979,360	4,081,148	67.3%	계약심사 낙찰차액	2,227,994	-63.2%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및 입소 대기 시스템 이관	440,632	162,108	278,524	63.2%	4분기 집행 예정	105,529	-76.1%
가정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성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국비)	38,100	15,000	23,100	60.6%	사업 운영기관 공모 시 1개 시설 접수됨	38,100	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450,000	65,278,423	100,171,577	60.5%	4분기 집행 예정	137,980,000	-16.6%

아동친화도시 추진	405,000	173,371	231,629	57.2%	4분기 집행예정	1,235,000	204.9%
저출산극복 인 식개선	89,580	40,068	49,512	55.3%	4분기 집행예정	574,112	540.9%
외국인주민 커 뮤니티 문화행 사 지원	105,000	49,590	55,410	52.8%	4분기 집행예정	105,000	0.0%
방문간호사 서 비스 지원	1,340,200	650,000	690,200	51.5%	4분기 집행 예정	1,340,200	0.0%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 방-폭력피해이 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국비)	60,000	30,188	29,812	49.7%	국시비 50% 매 칭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미달로 불 용예상	44,000	-26.7%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 반 조성 사업	354,000	196,260	157,740	44.6%	4분기 집행 예정 (민간경상보조금 교부 및 젠더십계 명 제작 등)	118,000	-66.7%
아동 복지 센터 운영 및 아동보 호 전문 기관 확대-지역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운영(국비)	55,124	31,740	23,384	42.4%	시기미도래	55,124	0.0%
여성 복지 시설 생활여성 추가 지원	94,000	54,160	39,840	42.4%	입소현원기준으로 집행중	80,000	-14.9%
아동 복지 센터 운영 및 아동보 호 전문 기관 확대(시비)	515,748	303,965	211,783	41.1%	시기미도래	491,246	-4.8%
늘푸른여성지원 센터 운영	72,943	43,538	29,405	40.3%	·청소년대상성매매 예방교육및공모전 용역사업비지출 (12월) ·직원대상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강사 비집행예정(12월)	44,858	-38.5%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873,781	529,932	343,849	39.4%	4분기 집행 예정	661,039	-24.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8,200,000	4,987,584	3,212,416	39.2%	지원대상 감소	7,000,000	-14.6%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여성정책 비전 추진 활성 화	228,600	140,000	88,600	38.8%	·3차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및분과위 개최 예정(11~12 월) ·꿈꿈서울가이드북 제작계약체결진행 (11월집행)	192,300	-15.9%
마을공동체 돌 봄 지원	581,650	361,213	220,437	37.9%	4분기 집행 예정	494,000	-15.1%
지역아동센터운	596,735	390,064		34.6%	토요일 이용 아		3.0%

영지원-토요운영(국비)			206,671		동 및 운영 센터 수 감소	614,454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	20,942,000	13,708,138	7,233,862	34.5%	지원대상 감소	19,362,000	-7.5%
입양아동가족지원	4,763,661	3,128,059	1,635,602	34.3%	입양아동 수 감소	4,228,638	-11.2%
여성정책평가 및 여성공무원역량강화	157,498	106,733	50,765	32.2%	4분기 집행예정 (여성공무원역량강화워크숍및여성정책평가실시)	155,606	-1.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근로자 지원	130,000	88,534	41,466	31.9%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생활보조금 일부 잔액 발생	115,000	-11.5%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시비)	642,729	447,013	195,716	30.5%	계약체결 사업으로 준공완료 후 사업비 지출 예정('17.11.)	705,000	9.7%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4,569,600	3,200,125	1,369,475	30.0%	중도 포기자 발생	4,894,740	7.1%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5,540,476	3,943,050	1,597,426	28.8%	그룹홈 인원 축소	5,244,591	-5.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국비)	750,000	534,517	215,483	28.7%	수요에 따라 의료비 지원 후 집행잔액	703,000	-6.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3,483,800	2,496,690	987,110	28.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감소	3,269,500	-6.2%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국비)	40,793,845	29,840,203	10,953,642	26.9%	4분기 집행 예정	41,053,174	0.6%
안심귀가스카우트	3,855,197	2,885,003	970,194	25.2%	집행시기 미도래(월별 집행)	4,479,033	16.2%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20,000	15,000	5,000	25.0%	10월이후연말성과 보고회개최 및 활동보고서 제작 지출예정	20,000	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7,478,766	5,611,575	1,867,191	25.0%	기능보강공사에 따른 종사자 및 생활인 일시 감소	7,860,325	5.1%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국비)	199,066,228	150,967,566	48,128,662	24.2%	4분기 집행 예정	204,556,173	2.7%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시비)	3,987,500	2,992,815	944,775	24.0%	4분기 집행예정	4,733,309	20.2%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200,000	153,380	46,620	23.3%	2차 보조금 교부 예정	200,000	0.0%
성폭력 방지 및	252,484	195,338		22.6%	시기 미도래(4분		3.7%

피해자 지원-성 폭력피해자 보 호시설(국비)			57,146		기 예산 배정 예 정)	261,776	
다문화자녀 학 습지원	292,000	227,000	65,000	22.3%	4분기 교부 예정	297,000	1.7%
위기청소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舊 위기 청소년 자립 꿈터 설치 운영)	450,000	350,600	99,400	22.1%	4분기 운영비 교 부	-	-100.0%
어린이집 종사 자 보수교육	563,412	444,879	118,533	21.0%	4분기 집행 예정	572,562	1.6%
여성인력개발센 터 운영	5,455,5 50	4,331,795	1,123,75 5	20.6%	집행시기 미도래 (월별 집행)	4,479,156	-17.9%

## ■ 불용율 과다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2017년 10월 말 현재 불용율이 과다한 사업을 살펴보면, '17년 신  
규사업으로 편성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5.4%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  
충'사업은 각각 24.8%, 39.5%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상기의 3가지 사업은 주요 시책사업으로 운영되는 되는 사업이라는 공  
통점을 지님에도, 4분기가 시작된 시점까지도 40%미만의 집행율을 보  
이고 있는바, 이들 사업의 추진의 효과성 등이 전반적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음.
- 또한, '다양한 품앗이 네트워크 조성(주민참여)'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  
업이었으나, 단 3%만이 지출됨.

## ■ 2017년 신규로 편성된 불용율 높은 국비사업에 대한 수요-집행관리 필요

- 국비지원 사업 가운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국비)’사업,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국비)’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아동학대예방 및 학대피해아동보호(국비)’ 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우수지역 아동센터(국비)’ 사업 이상 4건의 사업은 2017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설된 사업들이나, 이의 집행율이 각각 0%, 39%, 16%, 6%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더욱이 이들 사업들의 2018년 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동결되는 형태로 편성되고 있는바, 동 사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수요자 요구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집행 관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이들 사업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 연례적으로 동일 사유 반복되는 불용사유 발생 예산에 대한 검토 필요

- 특히, 이들 사업 가운데 2016년과 2017년 동일한 불용사유를 기록한 사업으로는 ‘입양아동가족지원’사업,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 이 대표적임.

## 11) 예산변경 과다 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필요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예산변경 과다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규모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검토 필요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사업 등 예산타당성 검토 필요

### ■ 예산변경 잦은 사업 현황

○ 최근 3년간의 사업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3년 동안 2회 이상의 예산조정(이용, 전용, 변경사용, 추경)이 발생한 대표적 사업내역은 아래 <표 30>과 같음.

<표 30 . 최근 3년간 예산변경 2회 이상 기록한 주요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연도별 예산 변경 내역	예산과목	예산변경 금액		
			감	증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01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02,318	(전용)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02,318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146,026	(전용)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		146,026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14,941	(전용)
	2015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전산개발비		314,94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1,981	(전용)
	201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회복지보조		11,98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95,800	(전용)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95,8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회복지보조	54,200	(전용)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사회복지보조		54,2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22,000	(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2,0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135,000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9,135,000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98,000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		98,000
	20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9,600,000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경상보조		9,600,000
어린이	201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9,450	

집 운영지원 (자체)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무관리비		169,450	
	2015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92,600	(전용)	
		어린이집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자치단체경상보조			92,60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870,386	(전용)	
		자치구육아지원종합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870,386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2,514	(변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52,514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515	(변경)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515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78,203	(변경)	
		영유아 보육료(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78,203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62,737	(변경)	
		보육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62,737
	2014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150	(전용)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11,15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9,128	(변경)		
일시보육 시범사업 운영지원(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289,12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201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0	(전용)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무관리비		90,00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추경)6,300,000		
	2015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480	(전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3,48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2,519	(전용)	
		자치구 건강장점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2,519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00	(전용)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700,00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166	(변경)	
가족역량강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8,166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016	입양아동가족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31,000	(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장운영보조			531,0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500,000	(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장운영보조			500,000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사회복지시설장운영보조	147,015	(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장운영보조			147,015
	201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528,366	(전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528,366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41,105	(전용)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41,105
	2015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2,728	(변경)	
		입양 및 기증유아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2,72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72,798	(변경)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72,79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7,281	(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147,281

## ■ 예산변경 과다사업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규모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예산 운용상 불가피하게 예산변경은 발생할 수 있다 하겠으나, 매해 반복적으로 과다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흡한 사업설계의 문제, 예산운용상 집행의 부적절 문제, 실수요예측 미흡, 과도한 예산 추계의 문제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기회비용을 사장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들에 대한 2018년 예산편성 규모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 등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등 예산타당성 검토 필요

- 대표적으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의 경우, 금번 2018년 예산은 총 70억 원을 편성(전년대비 12억 원 감액)하였는데,
- 동 사업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예산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예산변경을 통해 7억 5,416만원을 타 사업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도 14억 5백만 원의 불용액(8.9%)을 남겼고, 이어 2016년에는 추경을 통해 63억 원을 감액하고도 9억 4천 3백만원의 불용율(10.7%)을 기록한 바 있음.

<표 31 . 최근 3년간 결산 및 2018예산 편성안>

(단위: 백만원, %)

연도	당초예산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율	기타
2014	17,382	0	16,483	16,209	274	1.67	-
2015	16,570	-754	15,816	14,410	1,405	8.89	-
2016	8,763	0	8,763	7,820	943	10.77	추경 63억 감액
2017	8,200	-	-	-	'17년 10월말 현재 집행율 60.8%		
2018	7,000	-	-	-	-	-	-

- 아울러, 2017년 10월 현재 집행율은 60.8%(불용율 39.2%)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 동 사업은 그동안 동일 사업 내 빈번한 예산 변경 및 실수요 예측 미흡 문제가 매년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어왔던 바, 2018년 예산편성 규모 및 산출내역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이 요구됨.
- 이 밖에도 반복적으로 잦은 예산변경이 이루어진 사업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이 주요하게 지적되어 왔던바, 상기 사업들에 대한 2018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 자.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

### 1)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신규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낮은 세부사업의 문제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및 차별성 부족의 문제
-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1인 가구들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총 3억 3,400만 원을 편성 한 순수 시비 사업임.

<표 32.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334,000	(x-) 334,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55,000	(x-) 55,000	(x-) 0
민간경상사 업보조	(x-) 0	(x-) 0	(x-) 114,000	(x-) 114,000	(x-) 0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0	(x-) 0	(x-) 15,000	(x-) 15,000	(x-) 0
자치단체자 본보조	(x-) 0	(x-) 0	(x-) 150,000	(x-) 150,000	(x-) 0

○ 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① 취업 무료강좌 운영비 (4천 500만 원)와 ② 사업 성과회 비용 (1,000만원) ③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비(1억원) ④ 노년층 인생노트 제작 지원비(1,400만 원) ⑤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비(총 1억 6,500만원: 5곳 \*3,000만 원(공간지원) \* 300만 원(프로그램지원비))이 편성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33>과 같음.

<표 33.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예산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성과 발표회 등 10,000,000원*1식 = 10,000천원</li> <li>○ 취업 무료강좌 운영 45,000,000원*1식 = 45,000천원</li> </ul>
민간경상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년 남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20,000,000원*5개단체 = 100,000천원</li> <li>○ 인생노트 제작 14,000,000원*1식 = 14,000천원</li> </ul>
자치단체경상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프로그램 지원 500,000원*5곳*6회 = 15,000천원</li> </ul>
자치단체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지원 30,000,000원*5곳 = 150,000천원</li> </ul>

## ■ 1인 가구 지원의 필요성 및 의미

- 최근 가족분화로 인한 소규모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서울시 관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수의 27%( '15년 기준, 98만 2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sup>9)</sup>.
- 최근의 서울시 1인 가구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한 연구자료<sup>10)</sup>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한 사회 정책적 문제의 핵심은 ‘빈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 이를 고려해볼 때, 금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동 사업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의 취지는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동 사업의 취지를 구체화된 사업으로 연결함에 있어, 후술하는바와 같이 그 구체성과 예산 설계의 견고함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낮은 세부사업의 문제

9) 이는 지난 1980년에 4.8%에 불과했던 것이, 1990년에는 9%, 2000년에는 15.5%로 증가했다가, 2010년에는 23.9%, 2015년 27%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2015년 현재 4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일 정도로 그 비율이 높아진 것임.

10) 자료출처: 변마리(2014), ‘서울특별시 1인가구대책 정책연구’ 서울특별시의회

- 세부사업 가운데 ‘취업 무료강좌 운영’을 위해 4천5백만 원을 편성 하였는데, 여기 동 세부사업의 경우,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 동 예산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세대별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sup>11)</sup>, “20·30대 1인 가구들의 경우 취업을 위한 교육비 요구도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으로, 취업 강좌 개설과목은 “향후 1인가구의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임.
- 하지만, 취업 교육비에 대한 요구가 비단 1인 가구만의 욕구라고 할 것인가와 관련된 인과 설명이 뚜렷하지 않고, ‘교육 강좌 개설 사업’의 경우, ‘1인 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동 사업의 목적과도 거리가 있다 할 것임.

---

11) 장진희 외(2016), ‘서울1인가구 여성의 삶 연구(세대별 의제를 중심으로)’, 서울여성가족재단

##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및 차별성 부족의 문제

- 또 다른 세부사업 가운데, 1인 가구 남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을 편성하고,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인생노트’ 제작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천4백만 원을 편성함. 서울시는 이들 사업 운영방식을 민간 공모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임.
- 그러나, 상기 사업들은 현재 여타의 노인복지관 등 각종 복지기관들에서 진행 중인 장년층 또는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상당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1인 가구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차별성이 크지 않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

- 동 사업의 대표적인 세부사업으로,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지원 사업’ 예산임. 서울시의 설명에 따르면, 자치구 유휴 공간 5곳을 확보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로 각각 3천만 원씩을 지원하고, 각 공간별로 커뮤니티 프로그램 진행 비용으로 연간 3백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며, 이의 추진을 위해 신청 자치구를 선정하여 관련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임.

- 그런데 여기서, 동 사업추진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그동안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공간이 없어서 실현되지 않은 것인가?’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서울시에는 동 사업과 유사하게 서울시 차원의 각종 마을공동체 사업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예. 부모커뮤니티 사업 등)이 현존하는 가운데, 1인 가구만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또 다른 형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무엇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지점은 1인 가구들간의 서로의 공감 있는 연결망도 의미가 있지만, 1인 가구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 1인 가구만이 아닌 다양하고 다층적인 형태의 통합적 연결망이 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임.

## 2) ‘아동수당 지원’ 사업 (신규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아동수당에 대한 서울시 국고보조를 상향 조정 필요
-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한 (자치구)인력확보 및 운영 효율 강화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인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2018년 신규로 편성된 국고보조 사업임.
- 2018년도 예산은 총 2,202억 1천만 원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6개월 분이 편성된 것임. 이 가운데 국비는 1,295억 3천5백만 원 이고, 시비는 906억 7천4백만원 임(국비:시비:구비율=50:35:15).

〈표 34. ‘아동수당 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129,535,566 220,210,462	(x)129,535,566 220,210,462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0	(x-) 0	(x)129,535,566 220,210,462	(x)129,535,566 220,210,462	(x-) 0

## ■ '아동수당' 제도 추진 경위 및 그 의미 등

-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은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인구의 '양(量)'을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한 '질(質)' 제고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7년 5월 출범한 새정부에서는 아동수당 제도를 핵심적인 아동투자 정책으로 보고, 이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2018년 7월부터 시행 하겠다는 계획임.
- 이에 동 제도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세에서부터 만5세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월 10만원씩의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설계 됨. 정부는 상기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황으로, 이 제정안은 '18년 1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임.
- 아동수당의 도입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사후처방적인 정책 위주였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로써 그 의미가 크다<sup>12)</sup>고 할 것임.
- 다만, 동 제도의 구체적 추진과 관련한 상위법령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동 제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

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2018. 10)

정분담의 명확화 및 아동수당 추진을 위한 자치구 인력확보 및 운영효율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건고한 정책설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 아동수당에 대한 서울시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필요

- 아동수당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을 통해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2018년 보건복지부 내시액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국고보조율은 40%, 지방은 70%임. 다만, 서울시의 경우 사회복지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10%를 인상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함<sup>13)</sup>에 따라 국고보조율 40%에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되어 총 50%의 국고보조율이 적용되었고 금번 2018년 편성 예산의 국비와 시비 및 구비의 최종 내시비율은 50 : 35 : 15에 맞추어 계상 된 것임<sup>14)</sup>.
- 이에 금번 2018년의 경우 6개월 분(7월부터 실시)에 해당하는 예산액으로 총 2,20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향후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국고보조율이 확정되어 진다면 2019년에는 4,320억 원으로 그 예산규모가 급증할 예정이며, 연평균 4,200억 원('19~22년 평균)에 이르는 예산이 소요되고, 2022년까지 5개년 간 총 1조 9,2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표 35 . 연도별 아동수당 예산 추계 >

(단위: 억 원)

13) 사회복지비 지수 25 이상, 재정자주도 80 미만이면 10%p 인상, 사회복지비 지수 20 이상, 재정자주도 85 이상이면 10%p 인하

14) 아동수당에 대한 국고보조율 전국 평균은 71.8%이며, 서울시의 경우 차등보조율을 적용받더라도 50%에 그치지만, 나머지 시도는 최소 70% 이상의 국고보조율을 적용받고 있음.

구 분	2018년 (6개월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예산 (국비+시비)	2,590 (2,202)	5,082 (4,320)	5,032 (4,277)	4,972 (4,226)	4,946 (4,204)
국비(50%)	1,295	2,541	2,516	2,486	2,473
시비(35%)	907	1,779	1,761	1,740	1,731
자치구비(15%)	388	762	755	746	742

- 지난 2013년을 전후하여 무상보육실시 과정에서 보육료(누리과정) 부담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간 재정 갈등 사례에서도 경험하였듯이,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지방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국고보조사업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바, 지방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국고보조를 적용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특히, 금번 아동수당제도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인 바, 향후 서울시에서는 금번 내시액에 반영된 국고보조를 상향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요구 노력이 필요해 보임.

## ■ 아동수당 제도 추진을 위한 (자치구)인력확보 및 운영 효율 강화 필요

- 동 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추진비(운영비)’로 2억 1천4백만 원, ‘보조인력배치 등 제도구축 사업비’로 16억 4천6백만 원이 함께 편성됨. 이는 아동수당에 대한 대시민 홍보비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보조인력 배치(333명, 3개월분)를 위한 것임.
- 아동수당제도는 일선의 자치구를 통해 최종 수급자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청업무와 자격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하지만, 금번 예산에는 아동수당 도입 시기에 일시적(3개월)으로 한정된 보조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또한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최근 국가차원의 복지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일선의 동주민센터 복지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제도의 확장과 함께 이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의 배치는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는 바, 이의 예산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3)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신규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상 고려사항
-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설계 미흡 및 효과성 제고방안 필요
-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미이행에 대한 문제
- 자치구와의 중복지원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 홍보비 과다의 문제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 시비로 편성된 신규사업 임.
- 2018년 예산은 총 42억 7,500만 원을 편성함
- 구체적 지원 내용은 서울시 관내 출산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되, 지원 시기는 2018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계획함(37,750명 예상).

〈표 36.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4,275,000	(x-) 4,275,000	(x-) 0
사무관리비	(x-) 0	(x-) 0	(x-) 500,000	(x-) 500,000	(x-) 0
사회보장적 수혜금	(x-) 0	(x-) 0	(x-) 3,775,000	(x-) 3,775,000	(x-) 0

### ■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대한 정책효과성 고려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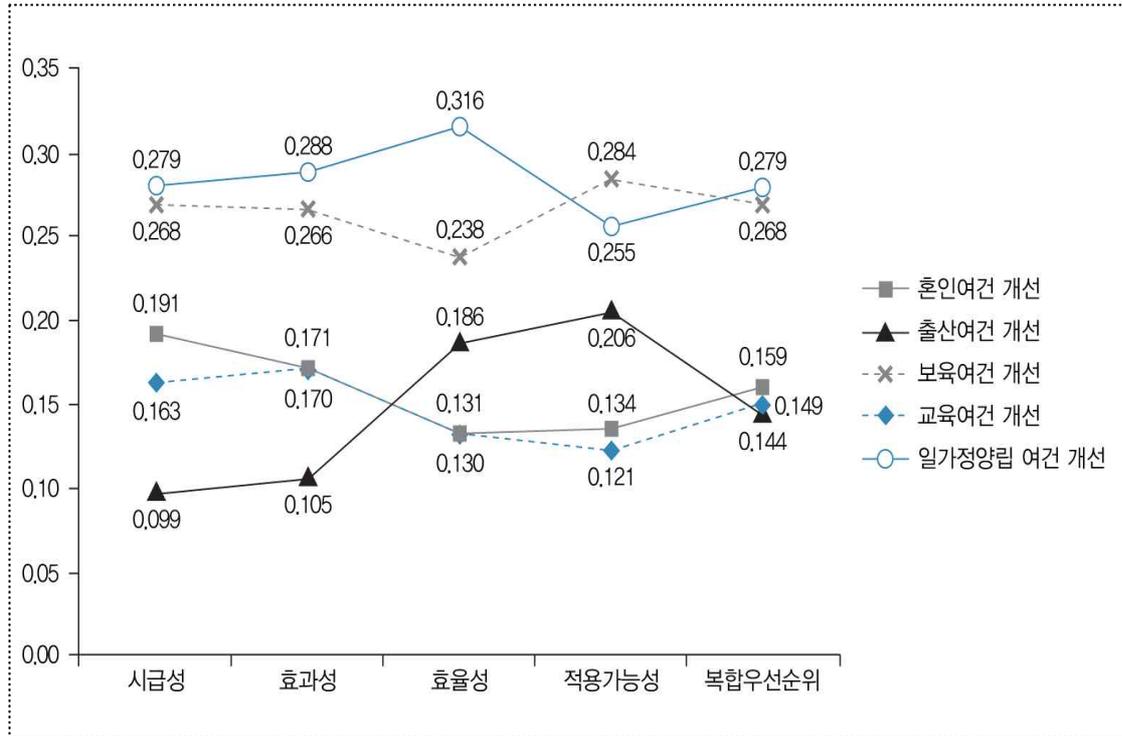
- ' 통계청에 따르면, ' 16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sup>15)</sup>은 1.17명 으  
로, 전년도(1.24) 보다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1.17명 보다 낮은 0.94명으  
로,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규모 감소 차원의 문제를 넘어 고령화와 맞  
물려 제반의 사회적 위험요인이 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  
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임.
- 이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이고 선제적 투자는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여짐.

15) ·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 상기 통계자료는, 통계청이 2017년 2월 22일에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결과'  
임 이 자료는 시·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한 출생, 사망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잠정  
결과이며, 출생통계 확정치는 '17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임.

- 이런 가운데 출산을 제고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2018년 신규 편성한 동 사업의 도입 취지는 그 긍정성이 크다고 할 것임.
  
- 하지만, 여기서 고려해 볼 점으로 제한된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출산여건 개선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로 적절한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2016)에서 발간한 ‘저출산 대책 평가’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을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적용가능성이라는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총 5개영역- ① 혼인여건 개선 ②출산여건 개선, ③보육여건 개선, ④교육여건 개선, ⑤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별로 그 정책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해본 결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여건’개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여건’과 ‘보육여건’ 개선 분야의 정책방향을 보다 우선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던 점을 참고해 볼만함.

< 그림 1. 저출산 정책 평가지표별 우선순위 분석-AHP 분석 >



\* 자료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6)

- 동 사업은 2018년 예산의 경우 7월부터 지원하기 위해 총 4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당장 2019년부터는 2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바, 시 재정여건 및 정책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

## ■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설계 미흡 및 효과성 제고방안 필요

- 동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상 지원 계획을 살펴보면, '18년 7월 이후 부터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17년 37,750명 목표)으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또는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임.
- 여기서, 고려해 볼 점은 우선 현금지원 방식으로 할 것인지, 바우처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설계가 미흡한 가운데 예산이 확보되면 이후 구체적인 사업설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실제 현금과 현물방식에 대한 정책 효과성 등도 미리 파악되지 않은 채 우선적으로 예산부터 확보하자는 의도로 보여짐.
- 또한, 출산축하용품비 10만 원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연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출산 장려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출생순서나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원 방안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현행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상 (제4조2) 축하용품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조례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 ■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미이행에 대한 문제

-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16))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이에 금번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신설은 상기 같은 법에 따라 이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 사업에 구분되는바, 사전에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sup>17)</sup>이나, 의회에 예산이 제출된 11월 10일 현재까지 이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와의 사전협의 시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에 제시하는 이유로 시의회 예산심의 이전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1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7) 그동안 상기 법령 개정내용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자치권 침해문제’와 관련한 논쟁이 있어왔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특정 개정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하지 않고 중복지원이 아니라면,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 존중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임.

-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17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시기는 “차기년도 예산사업의 경우 법정기한 내(4월 30일) 협의를 요청해야”하고, “4월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요청 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협정기한 내에 협의요청 하지 않은 건은 협의기관이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거나 시행시기 유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 행정자치부 발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2017)’에서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 다음으로, 만약 서울시의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된 이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의’ 의견을 받게 된다면, 결국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서울시 예산 편성 단계 또는 서울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 자치구와의 중복지원에 대한 정책 실효성 문제

-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은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2017년 기준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자치구에서 시행중 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자치구와의 중복지원의 문제가 제기 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표 37. 자치구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황〉

(단위: 명, 천원)

자치구	출산용품	2016년도		2017년도 (6월말까지)	
		수혜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수혜인원 (명)	지원금액 (천원)
합 계		26,223	471,213	15,038	345,796
종로구	'18년도부터 지급 계획				
중구	'16년 지급중단(16125 ~ 22까지 지급 후 중단)	70	만기업 후원	0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근거:조례 (10,320원 물품:기저귀, 물티슈)	1,512	18,919	670	6,914
중랑구	-				
성북구	근거:조례 (2원상당 육아책 또는 로션,위사세트)	2,689	58,324	1,183	33,410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근거:조례(2만원상당 아기 의류 세트)	4,137	63,805	1,760	29,895
은평구	근거:조례(셋째이후 출산기정, 1만원상당 상품권)	259	38,850	98	14,700
서대문구	※ 다자녀 입학축하 상품권(셋째아부터)	101	10100	115	11500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근거:조례(첫째아이 출산기정, 5만원상당 물품)	5,351	159,834	1,373	66,673
구로구	근거:조례(8천원상당 베이비로션,소독솜 등)	1,974	15,800	1,320	10,560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셋째아이후 구와계한건강보험가입및 보육료 지원 (1인당 2만원 이내, 5년간 지원)	6,114	105,581	2,862	49,164
관악구	-				
서초구	첫째 : 물티슈, 셋째이상 : 육아용품꾸러미 (서초구내 기업과 업무협약으로 지원)	4,016		1,712	
강남구	근거:조례 (첫째아이 출산기정, 5만원상당 물품)			1,823	91,150
송파구	-				
강동구	근거: 조례 (15천원 상당 DNA 아기 신분증 또는 DNA정보수집 키트 중 택)	-	-	2,122	31,830

\*자료출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 ■ 홍보비 과다 편성의 문제

- 동 사업에 편성된 세부예산 가운데, 동 사업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억 원이 책정 되었으나, 동 예산규모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18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 된 ‘아동수당 지원’ 사업의 홍보비는 2억 1,435만 원이 편성된 점을 참고해 볼 만하며,
  - 보육담당관 소관의 핵심 시비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홍보비(보육프로그램 유지비 포함) 내역도 최근 4년간 평균 2억 6,000만원을 편성했던 점을 비교·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표 38. 연도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내 홍보비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통계목	내역	예산액
2015년	사무관리비	홍보비	100,000
2016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및 보육프로그램 유지	360,000
2017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홍보 및 보육프로그램 유지	400,000
2018년	사무관리비	국공립어린이집 홍보	180,000
평균	-	-	260,000

#### 4)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기본재산의 운영 목적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제도적 명문화 필요
- 인력 관리 및 인력운영 예산관리 철저 필요
- 여성플라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 여성, 가족, 보육, 아동정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시민체감형 정책 실행 지원을 위한 서울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재단”이라 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31억 9천5백만 원을 증액(72% 증가)하여 76억 1천3백만 원을 편성함.

〈표 39.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417,312	(x-) 4,417,312	(x-) 7,613,000	(x-) 3,195,688	(x-) 72
출연금	(x-) 4,417,312	(x-) 4,417,312	(x-) 7,613,000	(x-) 3,195,688	(x-) 72

○ 서울시는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하여

- “ 2016년 출연기관 컨설팅 결과에 따른 연구인력 등 인력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665백만 원) 및 사업비 증가(451백만 원), 성평등 아카이브 구축(220백만 원) 등으로 세출예산 1천4백만원 증가” 한 한편,
- “전년 대비 기본재산 및 이월잉여금 수입 감소로 세입예산 1천7백만원 감소하여 출연금 31억 9천6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 기본재산의 운영 목적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제도적 명문화 필요

○ 여성재단의 2018년 구체적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141억 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출연금 수입은 전체예산의 54%를 차지함. 이는 `17년도의 출연금 비중인 35%에 비해 약 19% 가량이 증가한 것임.

<표 40 . 연도별 여성재단 수입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7년대비 증감액	증감율(%)
계	11,923	12,701	14,244	1,543	12.1
출연금 (53%)	5,260	4,417	7,613	3,196	72.3
자체수입 (47%)	6,663	8,284	6,631	-1,653	-20.0

사업운영수입	8	8	8	0	0.0
시설운영수입	4,256	4,261	3,981	-280	-6.6
기타수입	742	821	787	-33	-4.1
이월잉여금수입	600	482	0	-482	-100.0
기본재산	394	1,607	750	-857	-53.3
대행사업수입	643	1,103	1,103	0	0.0
기부금수입	20	-	-	-	-

- 여성재단의 출연금 비중은 2010년 총 수입액의 73%에 이르던 것이 2012년 이후 점차로 감소하여 2017년 35%까지 줄었다가, 2018년 다시 53.7% 로 증가한 것임.

<표 41 . 연도별 여성재단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예산	9,070	10,560	9,997	9,038	8,648	9,736	11,889	11,923	12,701
출연금	6,264	7,737	5,212	5,790	5,029	4,690	4,890	5,260	4,417
출연금비중 %	69%	73%	52%	64%	58%	48%	41%	44%	35%
재정자립도 %	31%	27%	48%	36%	42%	52%	59%	56%	65%

- 2017년도에 출연금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던 이유는 ‘기본재산’ 사용을 통한 자체 수입비율을 늘렸기 때문이었으나, 금번 2018년에는 ‘기본재산’ 수입 규모가 줄어든 만큼 출연금 비중이 증가한 것임.

- 여성재단의 ‘기본재산’은 2002년 여성재단 출범 당시 1백만 원으로 조성된 이후, 매 회계연도 결산 시 과다한 잉여금을 남기고, 이 잉여금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꾸준히 축적하여 2016년 말 기준 최대 누계액인 28억 1천2백만원을 조성하였음. 하지만 이처럼 과다한 잉여금(집행잔액<sup>18)</sup>) 및 기본재산으로의 축적 문제는 그동안 여성재단 예산운용의 비효율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여성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매년 기본재산의 일부를 수입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2015년 3억 원, 2016년 3.9억 원, 2017년 16억 원을 지출함. 금번 2018년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누계액으로 인해 7.5억 원을 편성한 것임.
-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목적이 제도적으로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는 않은 가운데, 이의 운영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다만, 여성재단 정관에 따라 ‘손익금이 남을 경우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유보한다’고는 규정 되어 있으나, 어떤 경우에 이월 또는 편입, 유보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18) <연도별 여성재단의 불용액 현황 >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2012	9,791,731	8,726,505	1,065,226	1,065,226	11%
2013	10,641,046	9,387,374	1,123,000	1,253,672	12%
2014	10,878,691	9,615,909	786,807	1,262,782	11.6%
2015	12,389,305	10,751,126	600,000	1,638,179	13.2%
2016	12,237,212	11,619,666	482,267	617,546	5.0%

기본재산의 축적과 사용용도와 기준 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 있다고 보여짐.

<표 42. 연도별 잉여금 및 기본재산 편입 현황>

(단위: 천원, %)

연도	잉여금	기본재산 편입현황	기본재산 누계액	기타 (세입조치)
2002	378,526	1,000	1,000	
2003	864,206	500,000	501,000	
2004	240,769	240,769	741,769	
2005	476,550	-	-	
2006	284,668	-	-	
2007	1,378,490	-	-	
2008	2,016,482	714,320	1,456,089	
2009	1,052,057	-	-	
2010	1,021,590	-	-	
2011	1,222,688	372,688	1,828,777	
2012	1,319,130	159,130	1,987,907	
2013	1,433,519	310,519	2,298,426	
2014	1,039,367	252,560	2,550,986	
2015	861,403	261,403	2,812,389	300,000 사용
2016	210,817	-	2,812,389	394,120 사용
2017	-	-	1,204,968	1,607,421 사용
2018	-	-	454,968	750,000 사용예정

## ■ 인력 관리 및 인력운영 예산관리 철저 필요

- 서울시는 여성재단의 출연금이 크게 증액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연구인력 등 인력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665백만 원)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설명함.
- 이는 ①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및 정원화 조치(2016. 12. 30)와 ② 연구직 신규 정원 증원(2017.7.26.) 조치에 따른 것으로, 기존(2015년 12월 29일 당시) 53명 이던 정원규모가 111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증원 및 전환관련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이해 됨.

<표 43. 여성재단 조직 개편 내용>

구분	개요	추진사항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 (16.12.30)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및 정원화	개선전(정원외)	개선후(정원)
		사업수행공무직 총4명 (3급2명, 4급2명)	일반직으로 확대 : 총4명(3급)
		사업및행정지원 공무직(11명)	일반직으로 확대 : 총 1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6명(신설))
		시설분야 공무직(39명)	기능직 세분화 및 확대 : 총 39명 (파트장 4명, 선임 8명, 주임 27명)

신규 정원증원 (17.7.26)	'16 서울시 출연기관 3단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부 사업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대	<b>항목</b>	<b>증감</b>	<b>사유</b>
		정책연구	+4(3급)	연구주제 영역 확대
		보육서비스지원센터	+2(4급)	심화과정 신설
		일가족양립 지원센터	+1(3급)	컨설팅 노무사 정규직화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2(3급,4급)	수탁사업의 자체사업 전환
		감사분야	+1(4급)	자체감사 강화
		시설분야등	△6(기능직 주임)	적정운영 인력대비 초과정원 조정
연구직 신설 (17.7.26)	'16 서울시 출연기관 3단계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	<b>항목</b>	<b>개선전</b>	<b>개선후</b>
		직종	일반직 기능직	일반직 연구직 기능직
		직급 및 직위	신설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원
· 기존 연구 수행 박사급 인력 ⇨ 연구직 · 현재 직제만 신설되었으며 후속조치(인사/보수등) 추진중(내부 논의 진행중)				

○ 그동안 여성재단의 인력구조는 2016년 말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근로자(99명)의 46%(46명)를 차지해 왔고, 이로 인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이들 비정규직원들(무기계약직, 공무원 등)의 경우 승진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바, 정규직 전환 조치를 통해 이의 문제가 개선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또한 정책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규 정원 증원 또한 여성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짐.

○ 다만, 고려할 점은 ‘인건비’ 관련 예산 증액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의 여성재단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영역에서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해 왔는데, 2014년에는 25%(8억 2천만원)가 불용되었고, 2015년에는 14%(4억 8천만원), 2016년에는 10%(4억 5천만원)가 불용되었던바, 이는 여성재단의 인력관리와 이에 따른 예산 운영

이 효율적이지 못해 왔다 할 것이므로, 금번 2018년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및 인력운영 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44.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백만원, %)

사업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비율
일반관리비	5,410	4,306	1,103	20.4	4,623	3,810	813	17.6	5,621	5,026	595	10.6
행정운영비	5,400	4,306	1,093	20.3	4,613	3,810	803	17.4	5,611	5,026	585	10.4
인건비	3,196	2,371	824	25.8	3,341	2,858	482	14.4	4,218	3,763	455	10.8
기관성과급	391	373	17	4.6	403	219	183	45.5	408	407	1	0.1
기본경비	1,812	1,561	251	13.9	868	731	137	15.8	984	855	129	13.1

- 또한, 서울시는 출연금 증액 사유로 '인력증원에 따른 소모품 및 비품비용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본경비 또한 그동안의 과도한 집행 잔액을 기록하던 항목이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표 44 참조).

## ■ 여성플라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2002년 준공된 여성플라자(동작구 소재)는 지하 3층, 지상 5층(대지면적 6,488 m<sup>2</sup>, 건축 연면적 22,519 m<sup>2</sup>)으로, 공간 운영은, ①대관전용 공간, ②여성단체활용 공간, ③서울시 정책사업 공간, ④스포츠센터위탁운영 공간, ⑤시민편의공간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여성플라자의 대관 이용율은 연평균 89.2%(`15~`16)이며, 수입액은 연평균(`15~`16년 평균) 41억 2백만원 원가량이 발생하고 있음.

〈표 45. 여성플라자 운영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별	2015년	2016년	2017년(1~9월)
대관	756,744	785,599	547,895
주차장	75,587	82,253	67,008
식당/연수	2,809,643	3,029,864	1,913,182
스포츠센터	318,000	318,000	318,000
커피전문점	54,355	10,267	10,633
<b>합계</b>	<b>4,014,329</b>	<b>4,225,983</b>	<b>2,856,718</b>

\*출처: 2017년 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 여성플라자의 운영은 공공시설로서의 공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해야하는 이중 과제를 갖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의 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사업수익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15년 전체 수입의 58.9%→'16년 55.9% 감소)로 나타나고 있고, 금번 2018년 예산에도 시설운영 수입금이 전년보다 4억 원 가량 감소(5,090→4,688억 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향후 여성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한 공간 운영의 효율화가 요구됨.
- 아울러, 준공 15년이 경과한 여성플라자는 시설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른 시설 안전 요구가 필요하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지비의 증가 등 다양한 위협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는바, 향후 여성플라자에 대한 시설노후화 개선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해 보임.

## 5)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 (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어렵고 복잡한 예산구조 및 예산과목 문제 개선 필요
- 차액보육료, 무상보육 시행에 맞게 국고보조 지원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공기청정기 사업,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임.
-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17억 743만 원이 증액(1%증가)된 1,409억 4,029만 원이 편성됨.

<표 4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38,113,568	(x-) 139,232,868	(x-) 140,940,298	(x-) 1,707,430	(x-) 1
사무관리비	(x-) 51,100	(x-) 51,100	(x-) 31,100	(x-) Δ20,000	(x-) Δ39
공공운영비	(x-) 25,600	(x-) 25,600	(x-) 23,000	(x-) Δ2,600	(x-) Δ10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x-) 12,600	(x-) 12,600	(x-) 13,000	(x-) 400	(x-) 3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138,024,268	(x-) 139,143,568	(x-) 140,873,198	(x-) 1,729,630	(x-) 1

- 동 사업의 주요 증감 사유는, 차액보육료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증액(17.7억원)과,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증액(58.9억 원)에 따른 것임.

## ■ 어렵고 복잡한 예산구조 및 예산과목 문제 개선 필요

- 상기 사업은, 예산규모가 타 예산사업에 비하여 매우 큰 사업임에도 아래 <표 47>에 제시하였듯이, 하위 통계목은 오로지 4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만 구성되어 있고,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때문에 아래 <표 47>의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예산 및 결산서에서도 볼 수 없는데, 이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47.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세부 사업 명세>

(단위: 천원)

구분	2017예산 (A)	2018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
계	138,113,568	140,940,298	2,826,730	(아래부분)
<b>사무관리비</b>	51,100	31,100	△20,000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4,500	4,50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위원회 운영	6,600	6,600	-	
보육사업설명자료인쇄	40,000	20,000	△20,000	책자 발간비 감액
<b>공공운영비</b>	25,600	23,000	△2,600	시스템 문자발송비 감액
<b>시책추진업무추진비</b>	12,600	13,000	400	
<b>자치단체경상보조금</b>	138,024,268	140,873,198	2,848,930	
보육교직원인건비	39,639,498	39,677,834	38,336	
대체교사 인건비	1,197,768	1,211,210	13,442	생활임금 증가 (8,197원→9,211원)
처우개선비	37,433,280	37,433,280	-	
종교시설 인건비	225,648	225,648	-	
시간연장 근무 수당 등	708,120	708,120	-	
365 어린이집	74,682	99,576	24,894	<시설수증가>3개소→4개소
시설운영비 지원	15,240,800	15,242,600	1,800	
영아반 운영비	12,413,400	12,413,400	-	
보육교사 중식비	2,646,000	2,646,000	-	
보수교육 중식비	176,000	176,000	-	
365 어린이집	5,400	7200	1,800	<시설수증가>3개소→4개소
보육료차액지원 (저소득)	720,420	833,820	113,400	차액보육료 단가 상승 (72,000→83,000) (58,000→68,000)
보육료차액지원 (일반)	11,270,384	13,040,304	1,769,920	차액보육료 단가 상승 (28,000→32,000) (22,000→26,000)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466,000	466,000	-	
천기저귀 지원	-	-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70,626,566	65,546,460	△5,080,106	서울형 개소수 감소 (1,146→1,130개소)
간접돌봄기관 운영	60,600	-	△60,600	기존사업(365 및 시간차 등형) 활용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1,119,300	5,886,180	4,766,880	개소당 3개→전 보육실 차등 지원 → 정액 지원 (24,900원)
재능기부	-	180,000	180,000	재능기부자 활동비 지원

-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408억 원)’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통계목으로만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각 하위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컨대, 앞서 설명과 같이 ‘보육교직원인건비’ 항목 또는 ‘시설운영비 항목’의 세세 내용이 증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예·결산서 상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예산서상에 세부항목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포괄예산처럼 사용되어지는 문제의 개연성을 없애고,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과목을 간명하고 단순하게 분리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 및 ‘보육료차액지원비 (저소득 및 일반)’,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비의 경우, 그 예산규모 만도 각각 655억 원, 138억 원, 58억 원에 이르고 있고, 이들 각각의 사업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도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 차액보육료, 무상보육 시행에 맞게 국고보조 지원 필요

- ‘차액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sup>19)</sup>,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즉,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임.
- 이에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17년 기준으로 매월 83,000원에서 68,000원 가량의 부모부담금을 지불해야 함.

〈표 48. 연도별 차액보육료 결정 금액〉

(단위: 천원)

연령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정부 미지원	정부 지원	차액 보육료	정부 미지원	정부 지원	차액 보육료	정부 미지원	정부 지원	차액 보육료	정부 미지원	정부 지원	차액 보육료
만3세	274	220	54	283	220	63	292	220	72	303	220	83
만4, 5세	263	220	43	270	220	50	278	220	58	288	220	68

- ‘차액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상보육 시대가 열렸음에도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

19)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영아반(만0세~만2세)은 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할 경우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의 증액 협의를 통해 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38.5%)에 해당하는 70억 8,400만원을 확보한바 있음. 이후 2016년 94억 원, 2017년 112억 원에 이어, 금번 2018년에는 전년대비 4,000원씩의 상향된 지원 단가를 예상하여<sup>20)</sup> 총 130억 원(전년대비 17.6억 원 증액)을 편성한 것임.

-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만3세 아동에게는 월 28,000원을, 만 4-5세 아동에게는 월 22,000원 씩, 총 38,562명에게 지원함.

<표 49. 연도별 차액보육료에 대한 서울시 예산액 >

(단위: 천원)

연 령	2016년		2017년		2018(안)		지원 수준	지원 아동수 (‘17년 10월 기준)
	차액보육료	서울시지원액	차액보육료	서울시지원액	차액보육료	서울시지원액		
만3세	72	24	83	28	-	32	지원액 결정기준액의 38.5%	18,298명
만4~5세	58	20	68	22	-	26	지원액 결정기준액의 38.5%	20,264명

- 2013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소득 계층에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으나,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여전히 ‘차액보육료’라는 부모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됨.

20) 차액보육료의 결정은 매년 연초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됨. 2018년분 차액보육료 결정액은 2018년 연초에 확정될 예정임.

- 이는 결국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피현상과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차액보육료’의 문제는 무상보육 정책과 배치된다고 할 것임.
-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하여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거나 또는 적어도 보육료 수준의 중앙-지방간 매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대정부차원의 국고지원 요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세세항목 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일정자격 기준을 갖추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거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응하는 인건비(시설장 및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취사부 100%등)와 운영비(시설당 총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지원 사업(시비 70%, 구비 30%)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2018년 예산안은 2017년(706억 2,656만 원)보다 50억 8천 1백만 원이 감액된 655억 4천백만 원이 편성됨.

<표 50.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서울형어린이집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
행정지원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 배상보험 일괄 가입지원 ▶아동 1인당 연간보험금액 신체생명 영유아4,890원/방과후3,990원/돌연사 300원	
	- 방문간호사 지원(영아전담 어린이집, 40인 이하)	
	- 안심보육회계 컨설팅, 아이조아 맞춤 컨설팅, 부모모니터링, 재무회계교육	
지원 예산	- 보육료 지원(월) : 종일반 0세 430천원, 1세 378천원, 2세 313천원, 3~5세 220천원 맞춤반 0세 344천원, 1세 302천원, 2세 250천원, 3~5세 220천원	
	- 기본보육료 지원(월) : 0세 395천원, 1세 191천원, 2세 125천원	
	-	- 차액보육료지원(월): 3세 24천원, 4~5세 20천원
	-	- 영아반 운영비 지원(월): 0세반 20만원, 1~2세반 15만원
	-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월) : 아동1인당 46~47천원	
	- 교재교구비(연1회) 1백만원 범위내 자치구별로 지원	
	- 보조교사 지원 784천원/월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 630천원/월 중 어린이집에서 선택	
	- 대체교사 파견 1,714천원(월) 또는 인건비 5만원(1일) 지원(대체교사 파견 원칙, 파견인력 부족시 지원)	
	- 인건비 지원(월) ▶원장(1호봉)의 80% ▶교사 서울형 호봉의 30~100% 영아반 80%, 유아반 30%, 취사부 100%(40인 이상 시설) ▶시간연장/ 24시간/ 장애아통합전담교사 80% ※ 서울형은 당월 지원된 기본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	-
	- 기타운영비지원(매월) : 평균보육료의 10% 아동(현원) 1인당 29,160원	-
- 환경개선비 4~10백만원 지원 (최초 공인시 1회)	- 민간서비스 향상비 4~7백만원 지원 (5년 1회, 선정기준에 따름)	
처우 개선비	-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지원(월) : 교사 1인당 30만원(또는 2~3세 혼합반 교사 20만원)	
	- 원장겸직 수당 75천원	
	- 처우개선비 지원(월) 원장195천원, 교사 145천원	- 처우개선비 지원(월) 교사 200천원
	- 보육교사 중식비 25천원	-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제도는 2008년 12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시장 방침)’을 통해 시작되면서, 2017년 9월 현재 총 1,078개소가 인증 유지되고 있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1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서울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한해의 서울시 순수 시비예산만도 연 평균 767억 원( '15~ '17년 3년 평균)에 이르고 있음.

〈표 51. 서울형어린이집 연도별 공인 현황〉

(단위 : 개소, 2017년 9월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 간	가 정	협 동	직 장
전체시설	6,240	1,257	32	119	1,952	2,611	29	240
서울형유지	1,078	0	0	21	515	536	6	0
비 율 (전체대비)	17.3%	0	0	17.6	26.4	20.5	20.7	0

-출처: 서울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표 52. 서울형어린이집 연도별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별	계	인건비	운영비
2015년	80,148,274	59,850,840	20,297,434
2016년	79,615,921	59,911,681	19,704,240
2017년	70,626,566	55,284,264	15,342,302

-출처: 서울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인바, 서울시 보육정책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이 차지하는 중요도(예산상 및 정책상 등)를 고려해볼 때, 조례상의 명문화를 통하여 보다 책임 있는 행정집행 뿐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서울형 인증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공기청정기 사업, 정책 효과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지난 ‘17년 6월 발표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4/4분기부터 시행한 것임.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11억 1,930만원, 전액 시비)함.
- 금번 2018년 예산으로는 12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원하기 위해 총 58억 8,618만원을 편성 한 것임.
- ‘18년 동 사업의 구체적 추진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에 ① 어린이집당 최대 3대 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보육실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② 공기청정기 미설치어린이집과 기설치 어린이집을 구분하여 각각 관리비와 임대료를 차등 지원하던 방식을,

일괄적으로 관리비 포함한 임대료 지원 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③ '17년 순수 시비로 지원하던 것을 구비와 매칭(시:구비=7:3)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됨.

〈표 53.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연도별 비교표〉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년
예산액	1,119백만 원	5,886백만 원
예산확보방법	추가경정예산	일반예산
예산 지원 주체	시비 100%	시비 70%, 구비 30%
대상	전체어린이집	전체어린이집
지원시기	2017년 10월~ 12월	2018년 1월 ~ 12월
지원기준	대여원칙,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 ·미설치어린이집: 관리비 포함 임대료 지원(월 24,900원 한도) ·기설치어린이집: 정기 관리비용 지원(월 14,900원 한도)	관리비 포함 임대료 지원(월 24,900원 한도)
규모	어린이집 당 최대 3대 한	전체어린이집의 모든 보육실

- 상기의 전년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시설 간 지원의 형평성을 개선 등 전년보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으나, 제한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볼 때 공기청정기 사업에 대한 정책 효과

성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이를 시급하게 확장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공기청정기의 효과적 유지·관리를 통한 정책 효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국공립 확충 및 입소율에 대한 자치구간 편차 해소 필요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적발비율 증가추세 문제 등 개선 필요
- 국공립 확충 사업 예산 계획 미흡 문제 개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 비 기준 상향조정 필요
- 다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운영자 증가 추세
- 임대보증금 지원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통계목에 대한 적절성 문제 검토 필요
- 민간전환 개인 위탁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운영 강화 필요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보육수요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임.
- 2018년 예산은 1,379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75억 2,000만 원이 감소(16% 감소)된 것임.

<표 5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1,953,840) 165,500,000	(x18,953,840) 165,500,000	(x17,000,000) 137,980,000	(xΔ1,953,840) Δ27,520,000	(xΔ10) Δ16
사무관리비	(x-) 450,000	(x-) 450,000	(x-) 430,000	(x-) Δ20,000	(x-) Δ4
행사운영비	(x-) 50,000	(x-) 50,000	(x-) 50,000	(x-) 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27,300,000	(x-) 10,300,000	(x-) 0	(x-) Δ10,300,000	(x-) Δ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x1,953,840) 137,700,000	(x18,953,840) 154,700,000	(x17,000,000) 137,500,000	(xΔ1,953,840) Δ17,200,000	(xΔ10) Δ11

○ 주요 감액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017년에 300개소 목표이던 확충 개소수가 2018년에는 250개소로 그 목표량이 감소된 데 따른 것임.

<표 55 .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연차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1,000개소	150개소	300개소	300개소	250개소
누계	(1,934개소)	(1,084개소)	(1,384개소)	(1,684개소)	(1,934개소)
예산	5,620억원	945억원	1,650억원	1,650억원	1,375억원
실적		163개소	302개소	191개소	

		확충 (목표대비 109% 달성)	확충 (목표대비10 1% 달성)	확충 ( '17.9. 30일 기준)	
--	--	-------------------------	-------------------------	---------------------------	--

· 출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서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 국공립확충사업 현황 및 실적

-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주요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예산규모는 '12년 889억 원, '13년 775억 원, '14년 798억 원, '15년 946억 원, '16년 1,662억 원, 2017년 1,136억 원<sup>21)</sup>으로, 지난 6년간 총 6,206억 원을 집행함.
- 그 결과, 동 기간동안('12년~'17년 9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총 952개소를 확충하였음.

21)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집행액 기준이며, 2016년은 예산액 기준임

<표 56.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및 확충 실적 >

(단위: 억 원, 개소)

연도	예산 집행액	확충 개소수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 주택	건물매입 (신규설치)		기존 전환 (매입·무상임대)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2012	889	107	35	19	24	16	9	4	
2013	775	102	36	10	27	7	17	5	
2014	798	87	18	4	39	6	17	3	
2015	946	163	5	9	11	11	6	32	89
2016	1,662	302	1	19	52	23	52	28	127
2017	1,136	191	4	9	90	7	4	18	59
합계	6,206	952	99	70	243	70	105	90	275

\* 자료출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인 결과, '11년 말 기준 총 658개소에 머무르던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를 '17년 9월 현재 총 1,257개소로 확대시켰고, '12년 당시 5% 내외에 머무르던 국공립 비율을 '17년 9월 말 현재 20.1% 까지 향상시켰(2017년 7월말 기준, 전국평균 7.7%).
- 서울시의 국공립 비율은 전국 국공립 평균 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보육공공성 기반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sup>22)</sup>.

22)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분석 및 미래전략 방안마련' 연구(2017, 안현미)에 따르면, '12년 ~ '16.12월 기준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291명)와 이용부모(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공공성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아동 발

<표 57 .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수, %, 2017년 9월 말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장
시설수	6,240	1,257	32	119	1,952	2,611	29	240
비율	100%	20.1%	0.5%	1.9%	31.3%	41.8%	0.5%	3.8%

\*자료출처: 서울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참고로, 2017년 기준(9월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또는 전환에 소요된 개소 당 단가는 평균 5.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고, 구체적으로는 신축의 경우 19.1억 원, 민간 전환의 경우 17.4억 원, 가정 전환 시 4.4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표 58.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단가>

(단위: 개소수, %, 억 원, 기준: '17년 9월 말 현재)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기존전환	
				신규	전환	신축	리모델링	민간	가정
개 소 수	191	4	9	33	57	7	4	18	59
비 율(%)	100	2.1	4.7	17.4	29.4	3.7	2.1	9.5	31.1
지원액(억원)	1,135	37.5	115.1	72.1	143.6	133.8	60.2	314.0	259.4
개소당(억원)	5.9	9.4	12.8	2.2	2.5	19.1	15.1	17.4	4.4

달 도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98.2%)와 보육교사(88.4%)는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을 원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규모별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9월말) 현재 확충된 191개소 기준으로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은 32.5%를 확충하고, 21인 이상 40인 이하 시설은 25.7%, 40인 이상은 41.9%가 확충한 것으로 기록됨.

〈표 59.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2017.9.기준)

구분	계	20인 이하	21인~40이하	40인 초과
국공립 확충수	191	62	49	80
비율 (%)	100.0%	32.5%	25.7%	41.9%

**■ 국공립 확충 및 입소율에 대한 자치구간 편차 해소 필요**

- '12년 이후 '17년 9월말 현재까지 확충 심의 완료된 952개소에 대한 자치구별 확충 현황을 살펴보면,
- 1개 자치구 평균 38개소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간 확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60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확충 현황 >

(단위: 개)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설치 계	1,257	28	21	25	70	32	55	39	66	46	42	56	40	47	62	64	69	60	45	52	52	65	61	53	55	52
확충 계	952	12	6	15	64	24	41	24	56	30	40	38	47	32	40	42	46	52	37	62	46	41	53	13	39	52
'12	107	2	2	3	16	2	3	2	3	3	2	2	7	7	3	5	6	6	6	5	7	4	2	2	2	5
'13	102	3	0	1	11	1	4	3	12	1	4	4	1	1	4	5	2	7	5	7	4	0	7	2	3	10
'14	87	2	0	0	4	0	4	1	9	1	1	0	2	0	4	2	10	8	2	3	1	11	8	8	1	5
'15	163	-	1	3	5	6	7	3	9	7	9	10	11	8	6	8	5	5	9	9	12	10	9	-	3	8
'16	302	2	2	3	20	7	18	4	13	13	12	13	14	11	12	14	17	15	10	21	15	14	21	1	16	14
'17 .9월	191	3	1	5	8	8	5	11	10	5	12	9	12	5	11	8	6	11	5	17	7	2	6	-	14	10

\*자료출처: 서울시 2016,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

- 구체적으로, ‘성동구’와 ‘성북구’의 경우 동 기간 동안 64개소, 56개소를 각각 확충하여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반면에, ‘중구’와 ‘종로구’의 경우 4개소, 6개소, 12개소를 각각 확충하여 가장 적은 수의 확충 기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중구’와 ‘종로구’ 같이 일반 거주 인구가 적어 국공립확충 개소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일부 자치구를 감안해 보더라도, 중랑구(24개소), 광진구(24개소), 서대문구(32개소)의 경우에도, 평균에 크게 밀도는 확충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치구별 영유아(0~5세)의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율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관내 영유아 평균 입소율은 16%이나, 은평구 9%, 송파구 11%, 강서구 12%, 광진구 14%, 노원구 14%, 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는 15%로 이들 자치구들은 평균 입소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1. 자치구별 영유아(0~5세) 전체수 대비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입소율〉

(단위 : 명, %)

구 분	영유아 수	국공립		민간	
		현원	입소율	현원	입소율
합 계	442,716	72,105	(평균) 16%	156,125	(평균) 35%
종로구	5,235	1,626	31%	2,152	41%
중구	4,863	1,660	34%	1,804	37%
용산구	9,546	1,548	16%	3,172	33%
성동구	14,981	3,735	25%	3,365	22%
광진구	14,839	2,025	14%	5,578	38%
동대문구	14,467	2,680	19%	5,222	36%
중랑구	17,649	2,789	16%	7,347	42%
성북구	19,749	3,208	16%	6,568	33%
강북구	12,389	2,120	17%	5,306	43%
도봉구	14,205	2,106	15%	6,294	44%
노원구	24,348	3,499	14%	8,466	35%
은평구	21,269	1,939	9%	9,614	45%
서대문구	13,523	2,380	18%	3,866	29%
마포구	17,975	3,466	19%	4,703	26%
양천구	20,485	3,749	18%	7,384	36%
강서구	31,239	3,833	12%	11,596	37%
구로구	21,546	3,462	16%	8,925	41%
금천구	9,819	2,268	23%	4,678	48%

〈표 61. 자치구별 영유아(05세) 전체수 대비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입소율〉

(단위 : 명, %)

구 분	영유아 수	국공립		민간	
		현원	입소율	현원	입소율
영등포구	17,470	2,677	15%	7,483	43%
동작구	18,233	3,348	18%	5,331	29%
관악구	18,876	3,696	20%	6,416	34%
서초구	22,568	3,407	15%	5,435	24%
강남구	23,801	4,117	17%	5,731	24%
송파구	32,852	3,582	11%	11,293	34%
강동구	20,789	3,185	15%	8,396	40%

\*자료출처: 서울시 2017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상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하여, 자치구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구청의 정책의지와 재정역량 등이 총체적으로 결과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이는 결국 국공립 확충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크다 하더라도 자치구 입장에서는 국공립 확충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운영에 필요한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에 있어 이러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의 차등적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필요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sup>23)</sup>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상기의 각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관할 자치구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확충결정 이후에는 관할 자치구 소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 선정을 심의됨. 그러므로 각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할 것임.
- 그런데, 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육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23)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및 강화·유지를 위해서라도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한 권고 조치 등 구체적 가이드 라인의 제공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개선 필요

- 아래 <표 62>은 연도별 서울시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제시한 것임.

- 최근 3년간( ' 14~ ' 16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지도·점검 시설 대비 연평균 13.4%에 이르는 위반시설이 적발되고 있고, 연도별로는 ' 14년 12.1%, ' 15년 13.2%, ' 16년 15%로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2.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단위: 개소수, %)

연도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지도·점검 개소수	위반 시설 개소수	위반 시설 비율	행정처분 유형별(건)				
					계	시정 명령	운영 정지	자격 정지	보조금환수 (건/천원)
2014년	844	758	92	12.1%	97	89	0	2	6/40,533
2015년	922	844	111	13.2%	195	182	0	4	9/5,379
2016년	1,071	1,019	153	15.0%	151	146	0	2	3/25,781

- 지난 2017년 5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초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린이집 원장 2년간 1억 원 횡령’ 사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상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점을 보여줬던 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어짐.
-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서울시의 국공립 확충 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확충 개소수 달성과 같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보육품질 개선에도 보다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 보여지며, 이의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 국공립 확충 사업 예산 운용 계획 미흡 문제 개선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한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표 63), 2015년부터 매년 대규모(변경예산의 3년 평균액은 120억 원) 예산변경 사례가 발행하고 있는 상황임.
  - 그 밖에 동 사업은 지난 2016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예산운용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변경심의 문제<sup>24)</sup>가 발견된 바 있음.
- 이는 핵심 시책사업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 및 예산 운용의 부실함을 증명한다 할 것인바, 서울시에서는 동 사업의 예산운용 계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4) 2016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7건(당초 승인액 기준 총 443억 8,400만 원에 해당) 기 확충결정 된 안건 중 ‘소재지 변경’등의 사유로 변경심의 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참고 바람.

〈표 6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 운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액					
			사무 관리비	연구 운영비	행사 운영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단체 자본보조
'13 년	예산액	77,611,267	100,000				77,511,267
	예산현액	77,611,267	100,000				77,511,267
	예산변경사항						
'14 년	예산액	81,473,404	30,000				81,443,404
	예산현액	81,473,404	30,000				81,443,404
	예산변경사항						
'15 년	예산액	95,003,246	100,000	50,000		9,600,000	85,253,246
	예산현액	95,003,246				0	94,853,246
	예산변경사항	0				9,600,000 (전용)	△9,600,000 (전용)
'16 년	예산액	166,577,257	458,000		50,000	18,165,000	147,904,257
	예산현액	166,599,257	360,000		50,000	27,300,00	138,889,257
	예산변경사항	△22,000	98,000			△9,135,000 (예산변경)	9,015,000 (예산변경)
'17 년	예산액	165,450,000	400,000		50,000	27,300,000	137,700,000
	예산현액					10,300,000	154,700,000
	예산변경사항					△17,000,000 (추경)	17,000,000 (추경)
'18 년	예산액	137,980,000	430,000		50,000	0	137,500,000

## ■ '임대보증금' 지원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통계목에 대한 적절성 문제 검토 필요

- 동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의 불완전성은 아래의 내용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 활성화 및 재원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방식을 신축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및 민·관 연대, 민간전환 방식 등으로 다양화 함. 특히, 민간부문과의 상생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에 큰 강조점을 두고 있음.
- 금번 2018년 동 사업에 대한 예산 통계목을 살펴보면, 국공립 확충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1,375억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함. 이는 그동안 민간전환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전세가약의 약 40%)' 지원을 명목으로 편성하던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2018년에는 '자치단체자본보조' 항목 하나로 통합한 것임.
- 서울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또는 그동안 지방단체경상보조금)' 항목으로 편성한 상기의 '임대보증금' 명목에 대하여 훗날에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에서 이를 취소할 경우 서울시비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시의회는 현행의 통계목상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의 통계목이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왔으나, 금번 2018년 예산에서도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채 편성해 온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국고지원비 기준 상향조정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서울시 차원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긴 하나, 일부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2018년 기준으로 볼 때, 국공립 확충 사업 총예산 1,375억 원 가운데 170억 원 즉 12.3%만이 국비이고, 나머지 87.6%에 해당하는 1,205억 원은 서울시비 임.
-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1개소당 평균 '17년 기준 19.1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국고 지원비는 개소당 약 17% 정도에 해당하는 3.2억 원만이 지원되고 있는 바,
  - 국공립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단가가 대도시 지역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 노력이 필요해 보임.

<표 6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관련 국고보조 현황>

(단위: 개소, 억 원)

구 분	총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개소수	예산
확충 현황	465	2,610	163	948	302	1,662	191	1,655 (100%)	250	1,375 (100%)
국고 지원	184	294.2	78	142.9	106	151.3	90	190 (11.5%)	85	170 (12.4%)
시비 지원	281	2,315.8	85	805.1	196	1,510.7	191	1,465 (88.5%)	250	1,205 (87.6%)

■ 다수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운영자 증가 추세

- 2017년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을 분석해 본 결과, 1개의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형 어린이집이 다수 발견됨.
- 물론, 단순히 1개 법인 또는 개인이 다수의 어린이집을 위탁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대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과정에서 기업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한 대기업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자칫 창의적이고 성실한 소규모 진입 예정자의 진입 기회의 저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65 .2개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현황 >

(단위: 개)

총계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	10개소	12개소	22개소
224	172	20	8	13	1	2	1	2	1	1	3

## ■ 민간전환 개인 위탁체 국공립어린이집의 책임운영 강화 필요

- `12년 이후 서울시에서는 연평균 158개소(`12~`17년 9월 현재, 952개소 확충)에 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음.
- 특히 `15년 150개소, `16년과 `17년에는 각각 30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하면서, 확충 방법의 다양화 및 어린이집 규모와 위탁체의 다양화로 새로운 방식의 확충 모델이 확대 되고 있는데, 최근의 특징적 확충 모델은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확충방법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임.
- 서울시 자료<sup>25)</sup>에 따르면, 2015년에는 총 확충 수 163개소 가운데 123개(74.2%)가 민간전환 방식<sup>26)</sup>으로 나타났고, 이어 2016년에는 총 302개소 가운데 165개소(54.6%), 2017년(9월 현재)에는 총 191개소 가운데 134개소(74.5%)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됨.

<표 66. 2015~201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유형별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기존전환		미가처분 총계 (A+B+C)	
				신규	전환 (A)	신축	리모델링	민간 (B)	가정 (C)		
2015년	개소수	163	5	9	9	2	11	6	32	89	123
	비율(%)	174.2	3.1	5.5	5.5	1.2	6.8	3.7	19.6	54.6	74.2
2016년	개소수	302	1	19	42	10	23	52	28	127	165
	비율(%)	154.6	0.3	6.3	13.9	3.3	7.6	17.3	9.3	42.0	54.6
2017년	개소수	191	4	9	33	57	7	4	18	59	134
	비율(%)	174.5	2.1	4.7	17.4	29.4	3.7	2.1	9.5	31.1	74.5

25) 2017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26) <표 66>에서, 민간전환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전환(A)’ 방식과 ‘기존 전환’ 방식의 ‘민간(B)’ 및 ‘가정(C)’ 유형이 여기에 속함 (음영부분으로 처리)

- 기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숫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여기에 부가되는 또 다른 특징은 기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최초의 운영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인해 그 만큼의 개인 위탁체가 증가<sup>27)</sup>한다는 것을 의미함.
- 결국,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확충방식과 운영방식의 다양화는 주로 기존의 민간영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바, 실제 운영에서 과거 민간과 다른 국공립으로서의 운영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공립어린이집의 지도·감독 결과 국공립확충이 본격화 된 이후부터 적발 비율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볼 때, 서울시에서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책임운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현재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급속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리를 위한 조직은 확충사업 이전과 비교해볼 때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7)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확충·개원한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개인 운영 비율은 총 49.5%로 나타남. (자료출처: 김송이, 2017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성과 분석 및 미래전략 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발간예정))

- 2013년 이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정부차원의 보육료 및 어린이집 관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육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 보육담당관내 국공립 확충 및 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개편이 요구됨.

##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자치 조례는 현행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거함.
  - 이 조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한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앞서 제시한 자치구간 격차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각종의 조직 및 효율적 지도·점검의 방안 등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7)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보 필요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영아 80%, 유아 30%) 재조정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부 지원 내역별 재원 부담률은 아래 <표 67>와 같음.

<표 67 .사업 내용별 재원부담률 >

지원대상	지원내용	재원부담
정부지원시설교직원	- 국공립 및 법인시설 : 원장 80%, 보육교사 (영아 80%, 유아 30%), 취사부 100%	▶ 국고보조사업 (국고 30%, 시비 49%, 구비 21%) ▶ 국고미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 시비 79%, 구비 21%
	- 영아전담 어린이집 : 원장 80%, 보육교사 80%, 취사부 100%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원장 80%, 보육교사 80%, 취사부 100%, 치료사 100%	
	-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80%, 민간시설 보육교사 130만원	
	- 시간연장 어린이집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80%, 민간시설 보육교사 120만원	
	- 방과후 어린이집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 이수한 보육교사 별도 채용시 50%	

- 2018년 예산은 2,045억 5,617만 원으로, 전년대비 54억 5,994만 원이 증액(2% 증가) 편성 되었고, 증액사유는 “국공립법인 종사자 증가 등에 따른 국비증액”으로 밝히고 있음

〈표 68. ‘보육돌봄서비스-보육교직원 인건비’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58,557,640) 182,612,495	(x64,165,640) 199,096,228	(x68,772,626) 204,556,173	(x4,606,986) 5,459,945	(x7) 2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58,557,640) 182,612,495	(x64,165,640) 199,096,228	(x68,772,626) 204,556,173	(x4,606,986) 5,459,945	(x7) 2

## ■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보 필요

- 서울시는 `12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책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12년 이후 총 952개소에(개소 기준, 599개소) 이르는 어린이집을 확충 함.
- 그런데, 이렇게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상당수가 보건복지부에 공식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등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 2011년 당시 11개소(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의 1.7%)였던 것이, 2017년 9월 말 현재 347개소로 증가하여,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수 대비 27.6%에 이르고 있고, 연도별 미등록 비율은 점차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표 69.연도별 정부등록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내역 >

(단위: 개, %)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
전체 국공립 수		658	690	750	844	922	1,071	1,257
복 지 부 등 록	등록국공립 수	647	675	737	833	759	811	910
	등록비율	98.3	97.8	98.3	98.7	82.3	75.7	72.4
	미등록 수	11	15	13	11	163	260	347
	미등록비율	1.7	2.2	1.7	1.3	17.7	24.3	27.6

· 자료출처: 2017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 서울시는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 미승인” 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이에 따라 미승인 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시비(79%)와 구비(21%)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2017년 기준 이들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비 지원금은 301억 원에 이르고 있고 '17년 7월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의 19.7% 감소된 국공립어린이집은 향후 전체 어린이집의 30%에 이르는 비율까지(2018년까지 총 1,934개소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미등록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지원 관련 사항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따른 시비차원의 인건비 지원 부담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비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현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를 향해 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영아 80%, 유아 30%) 재조정 필요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시설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영아반 교사의 경우 80%를, 유아반의 경우 30%를 지원하고 있음.
- 이처럼 영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비율(80%)에 비해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비율(30%)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애초 정부지원 인건비를 책정할 당시 영아반 기피현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의 취지로 그 기준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이해됨.

- 하지만, 그동안 보육정책이 발전해 오면서 과거와 같은 영아반 기피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인건비 지원 비율이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당장 인건비 재정을 충당해야하는 보육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실력 및 선호와는 관계없이 호봉 높은 보육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향후 영아반과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이 보육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그 개선이 필요해 보임.

## 8)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사업 (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계속사업임에도 예산흐름을 알 수 없는 방식의 예산운용 개선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애주기별 성인지 교육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활동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16년부터 시행한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임.

- 2018년도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7천만원 이 감액(67% 감소) 됨.

〈표 70.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00,000	(x-) 400,000	(x-) 130,000	(x-) Δ270,000	(x-) Δ67
사무관리비	(x-) 40,000	(x-) 40,000	(x-) 130,000	(x-) 90,000	(x-) 225
민간경상 사업보조	(x-) 360,000	(x-) 360,000	(x-) 0	(x-) Δ360,000	(x-) Δ100

■ **계속사업임에도 예산흐름을 알 수 없는 예산운용 방식 개선 필요**

- 서울시는 사회전반의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특별시 3.0’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의 하나로 동 사업(협치예산)을 추진한 것임.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안심특별시 3.0’은 그동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던 성인지 정책의 방향을 성평등 가치를 기반 조성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성인지 정책을 모색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동 사업을 통해 2017년 한해 동안 개발·보급된 주요 교육 콘텐츠는 ‘기존의 전래동화 중 성차별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구성’ 하여 보급하고,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 등 아동·청소년 대상 활동가들을 위한 성인지 콘텐츠를 개발’ 하며, ‘성평등 정책

이 일상 속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한 길라잡이 기획서' 등 임. 이러한 콘텐츠 개발·보급은 그동안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차별화되고 나아가 견고화 되어져가는 성차별 의식의 연결고리를 직시하고, 이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확장시키는데 그 기여가 컸다고 보여 짐.

- 하지만,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2018년도 예산은 상기에서 설명하였듯이 전년대비 67%(2억 7,000만 원 감액)가 삭감되어 편성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음.
- 삭감사유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액” 조정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 설명대로라면, 실제 동 사업(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은 예산서 수치상 감액된 것으로 기록되지만, 참여예산사업까지를 보태면, 실제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2017년 예산 4억 원 보다 1억 3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 5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음.

〈표 71. 주민참여예산 편성으로 삭감된 예산 사업내역〉

(단위 : 천원)

예산사업 명	예산유형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전년대비액 (증감율)	합계
성평등 문화 확산 조성	계속사업	400,000	130,000	- 270,000 (- 67.5%)	530,000
마을속 성평등 학교만들기	참여예산사업 (신규)	-	400,000	400,000 (100%)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계속사업	354,000	118,000	- 236,000 (- 66.7%)	418,000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정책 만들기	참여예산사업 (신규)	-	300,000	300,000 (100%)	

- 현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체계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심사한다’는 명목하에 참여예산위원회가 참여예산사업 최종 결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유사·중복 사업 등 사업 운영에 관한 타당성 및 실효성에 관한 소관 실·국의 검토의견이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해 동 사업과 같이 주민참여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별도의 사업비로 편성하고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형태의 예산운용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결국 예산서 상으로는 기존의 계속사업이 어떠한 역사를 갖고 운용되어 왔는지 그 연속적인 흐름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년대비 삭감된 예산을 배정 받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동 사업의 예산 흐름은 다음연도의 예산까지도 복잡하게 만들고 상당한 혼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운용의 사례로 보여짐.
- 참고로, 2018년 예산 사업 중 상기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의 편성으로 일반예산이 삭감시키고 예산운용의 흐름에 혼동을 주는 사례’로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들 수 있음.

- 동 사업은 2017년 3억 5,400만 원 이던 것이 2018년에는 1억 1,800만원으로 감액(2억 3,600만원 감액, 66.7% 감소) 되었는데, 감액 사유는 참여예산 사업인 ‘시민의 눈으로 성평등정책 만들기’사업에 3억 원이 편성됨으로써 감액 조정한 것임. 결과적으로 ‘성주류화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서상 감액 되었지만, 실질적 예산 운용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6,400만 원이 증액 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71 참조).

### 9)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시비)’ 사업 (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종사자처우 개선 및 종사자 임금테이블 마련 필요
-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등 돌봄 환경 개선 필요

#### ■ 사업 및 예산 개요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 운영비 지원사업과 별개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순수 시비 사업임.
-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7억 9,571만 원을 증액하여 총 47억 3,330만 원을 편성함.

<표 72.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시비)'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937,590	(x-) 3,937,590	(x-) 4,733,309	(x-) 795,719	(x-) 20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x-) 3,937,590	(x-) 3,937,590	(x-) 4,383,309	(x-) 445,719	(x-) 11
자치단체 자본보조	(x-) 0	(x-) 0	(x-) 350,000	(x-) 350,000	(x-) 0

## ■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17년 6월 현재 총 427개가 운영 중이며, 동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는 총 1,030명, 이용 아동 수는 11,374명임.

<표 73.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

(단위: 개소, 기준: 2017년 6월 현재)

합계	총 개소수			종사 자수	이용 아동수	특성별 운영현황	
	국·시비 (2년이상)	시비 (1년이상)	미지원 (1년이하)			특수 목적형	토요 운영
427	412	7	8	1,030	11,374	61개소	176개소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된 운영시설에 한하며, `17년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총 419개소임.

## ■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필요

-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06년 97개소였던 것이, 10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하여 `17년에는 427개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동안의 지원 예산도 `06년 23억 원에서 `16년 357억 원으로 1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해 왔음.

<표 74.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지원 (개소)	97	214	296	349	408	416	422	427
예산 (백만원)	2,328	5,544	12,073	22,088	31,387	32,937	33,407	35,725

-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체 별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운영자의 비율이 68.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5. 지역아동센터 운영체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국공립			민간					개인
	소계	공립·구립		소계	법인			종교법인	
		직영	위탁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개소수	22	8	14	<b>405</b>	28	28	32	24	<b>293 (68.6%)</b>
종사자수	67	21	46	<b>963</b>	67	68	73	63	692

- 지역아동복지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지만, 그동안 타 시설들에 비해 공공성 강조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주목 받지 못해 왔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일정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대부분이 민간/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현상은 보육분야 전달체계상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을 점유해왔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sup>28)</sup>, 민간 공급체계의 과다로 인한 문제는 이미 보육분야 경험을 통해서도 그 시사점을 얻어 볼 만함.
- 이제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그동안 관심이 적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때임. 특히 서비스 질 향상을 실질적 프로그램비 필요,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전문성 강화, 평가철저 및 평가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둘러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검토가 요구됨.

## ■ 종사자처우 개선 및 종사자 임금테이블 마련 필요

- 최근 실시된 연구결과<sup>29)</sup>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타 유사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임.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지원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임금테이블이 부재한 것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음.

28) 서울시의 경우 2012년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은 5%였으나, 2017년 현재 20%까지 상향됨. 이는 서울시 차원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음. 2011년 7월 기준 전국 평균은 7.7%임.

29) 송이은(2017),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제고를 통한 사기진작 및 잦은 이직을 보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안정적·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난 `12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시비 사업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7년 현재 1인당 월 25만 원 씩을 지원하고 있음 30).

<표 7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내역 >  
(단위: 천원, 명)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처우개선비 (1명/1개월)	130	160	190	220	220	250
1인당 총액	1,560	1,920	2,280	2,640	2,640	3,000
예산편성 지원인원(명)	800	840	902	940	981	1,000
소요예산(천원)	1,248,000	1,613,000	2,058,000	2,481,600	2,589,840	3,000,000

-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수준(2018년 기준 158만 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유일하게 서울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바(생활임금대비율 95%), 이들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가 절실한 것으로 파악됨 (아래 표 77 참조). 또한, 현재 인건비의 책정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함으로써 자치구 및 시설 재정여건에 따라 임금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

정으로 동일 노동을 하는 시설 종사자간에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근본적으로는 중앙차원의 임금 테이블 마련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이와 함께 서울시 차원의 보조적 지원을 늘려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짐.
- 이를테면, 2018년 종사자처우개선비(월 25만원)는 전년과 동결되어 편성되었는데, 단가를 5만원씩 인상(25만원 → 30만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이 경우 추가 예산은 6억 2천만 원(1,029명)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서울시 생활임금 대비율 98% 가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짐.

<표 77.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급여 및 처우개선비 예산 추계 >

(단위: 천원, 명)

구 분	처우 개선비	예산 편성액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액	총급여	서울시 생활임금	생활임금 대비율
2017년 (기준인원, 1,000명)	월 25만원	3,000,000	1,540	1,790	1,713	104% (+77)
2018년 (기준인원, 1029명)	월 25만원	3,087,000	1,580	1,830	1,926	95% (-96)
	월 30만원	3,704,400		1,880		97.6% (-46)

## ■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등 돌봄 환경 개선 필요

- 금번 2018년 예산에는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금 (1억7,8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음. 이는 여름철(2개월) 폭염과 겨울철(2개월) 혹한에 대비하여 냉난방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임.
-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방과 후 및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이용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냉난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편성된 동 예산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짐.

### 1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계속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보육사 배치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아동양육시설 이동, 정신건강 취약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지원 필요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절차 미이행 문제

## ■ 사업 및 예산 개요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조성·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소관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임.
- 2018년 예산안은 2017년 대비 66억 5,078만 원이 증액(9% 증가)된 766억 4,231만 원이 편성됨.

〈표 7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69,991,522	(x-) 69,991,522	(x-) 76,642,311	(x-) 6,650,789	(x-) 9
사무관리비	(x-) 51,000	(x-) 51,000	(x-) 39,400	(x-) △11,600	(x-) △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4,800	(x-) 4,800	(x-) 4,800	(x-) 0	(x-) 0
민간위탁금	(x-) 15,940,778	(x-) 15,940,778	(x-) 15,225,660	(x-) △715,118	(x-) △4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x-) 52,794,944	(x-) 52,794,944	(x-) 61,339,451	(x-) 8,544,507	(x-) 16
민간위탁 사업비	(x-) 1,200,000	(x-) 1,200,000	(x-) 33,000	(x-) △1,167,000	(x-) △97

○ 주요 증액 사유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충원 필요 인력 일부 반영 분(88명, 59억 원)과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금(신규, 13.5억 원)과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입된 공기청정기 지원비(신규, 9,700만원) 등이 증액된 것임.

## ■ 지원대상 시설 현황 및 내용

○ 2017년 10월 말 현재 동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은 총 63개소로 아래 <표 79>과 같음.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1,351명이며, 시설 내 생활아동은 총 3,700(공동생활가정 320명 제외)명 임.

<표 79. 지원대상 시설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계	보호필요아동 생활시설					보호필요 및 일반 아동 이용 시설				아동 자립 지원 단
		소계	양육	자립 지원	보호 치료	종합	소계	지역아 동복지 센터	정보화 교육 센터	자광아동 가정상담 원	
시설수	63	41	34	3	3	1	21	18	2	1	1
종사 자수	1,351	1,260	1,140	12	62	46	91	77	6	5	3

※ 종합시설 1개소는 아동복지센터(서울시 사업소)로 예산을 자체편성하므로 별도로 예산편성

## ■ 보육사 배치 법적기준 준수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이 강화<sup>31)</sup>

### 31) □ 종사자(보육사) 배치기준 변경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 : 「별표 11」
- \* 적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구분	현행	개정
30인 이상	- 0~2세 : 아동 3인당 1인 - 3~6세 : 아동 7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10인당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10인이상~30인 미만	2인 (아동 20인 초과시 1인 추가)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10인 미만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공동생활가정	1인	- 0~2세 : 아동 2인당 1인 - 3~6세 : 아동 5인당 1인 - 7세이상: 아동 7인당 1인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 제4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8월 6일까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됨에 따라 2015년 8월 4일부터는 강화된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함.

- 이에 2017년 10월 말 기준 법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인력은 1,383명이지만, 현원은 930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6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금번 2018년 예산의 경우에도 법정기준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법정기준을 맞추려면 추가로 453명을 필요로 하지만 127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함. 이에 법정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326명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법정기준에 맞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번에 증액 편성된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로 약 15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임.

**□ 종사자(보육사 제외) 배치기준 변경**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 : 「별표 11」

직 종	현 행	개 정
영양사, 입상심리상담원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생활복지사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50명 초과시 1명 추가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사무원	-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조리원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초과시 1명 추가
자립지원 전담요원	- 아동 10명이상 30명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명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1명 -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1명 - 아동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표 80. 법정기준 준수 종사자 추가 확보 필요 예산액>

(단위: 명, 백만원, 2017년 10월 현재 기준)

구 분	`17년 10월 현재 기준				`18년 예산반영분		추가필요사항 (미반영분)		
	법정 기준	현원	부족 인원	연간 추가 소요 예산	총원	예산액	필요총원	예산액	
총 계	1,383	930 (67.2%)	453	21,211	127	5,938	326	15,272	
보육사(0~2세)	2교대	390	242 (62.1%)	148	6,929	127	5,938	21	991
보육사(3~6세)		196	126 (69.2%)	70	3,277	0	0	70	3,277
보육사(7세 이상)		330	206 (62.4%)	124	5,806	0	0	124	5,806
조리원 등 14직종	-	467	356 (76.2%)	111	5,197	0	0	111	5,197

\*출처: '서울시 가족담당관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강화는 기존 대형 시설들을 소규모 숙소화 하고 가정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의미가 크다 할 것인 바,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보호를 종사자의 적절한 배치인력을 통하여 요보호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 배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써 전액 시비를 통해 충당해야하는 상황으로,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매년 연평균 145명(15년 38명, 16년 42명, 17년 62명 총원)의 추가 인력을 증원해 왔으나, 개정된 「아동복지법」 기준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이와 관련한 최근 2017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18~’20년) 단계별로 부족 인력을 총원 하겠다<sup>32)</sup>”는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32) 서울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취약문제 개선을 위한 개입 및 지원 필요

- 서울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결과<sup>33)</sup>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실시(총 34개소 시설)한 843명 중 55.2%에 해당하는 465명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됨.
- 이는 서울시 소관 아동생활시설 입소한 전체아동(총 2,434명)의 19.1%에 해당하는 것임. 다시말해, 아동생활시설 아동 5명 중 1명 가량은 정신건강상 개입 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임.
- 특히, 이들 시설 가운데 34개소 가운데 13개소는 건강검진 대상 아동의 전원(100%)가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판정이 나온 상황으로 그 심각성이 크다 할 것임.
- S시설은 입소 현원 중 77%가 정신건강 개입을 필요로 했고, E시설은 71%, 또 다른 S시설은 68%, K시설은 50%가 정신건강 취약자로 나타남. 이들 시설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민간운영 지원 시설임. 시립 시설 중 에도 여자 아동·청소년(13~18세)이 생활하는 시설(과란꿈터)의 경우에는 전체 현원(247명) 중 11%가 정신건강에 취약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부칙 제4조<sup>34)</sup>에 따르면, 아동 30명 이상인 경우 임상심리상담원 1명을 배치해야하는데, 현재 서울시 관내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시설은 2곳으로 조사됨. 한편

33) 서울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34) 상기 주석 31 참조

현행법령상 30명이상이면 1명 배치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기에서 살펴 보았듯이 시설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 필요 비율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30명 이상 1명 배치’라는 최소 기준을 강하여 예를 들어 “정원 30명 당 1명”과 같이 시설 정원 규모에 따라 배치 인력을 추가하는 방안으로의 제도개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81. 서울시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검진 >

(단위: 명)

연도	시설명	현원	아동 정신건강 검진(심리검사)						
			인원	결과				임상심리상담사	
				정상	개입필요	정신검진대상 대비 개입필요율	현원대비 개입필요 비율	법정기준	현원
계		2,434	843	378	465	55.2%	19.1%	34	32
1	○○○	57	10	4	6	60.0%	10.5%	1	1
2	○○○	66	28	22	6	21.4%	9.1%	1	1
3	○○○	60	41	29	12	29.3%	20.0%	1	1
4	○○○	50	10	0	10	100.0%	20.0%	1	1
5	○○○	83	8	0	8	100.0%	9.6%	1	1
6	○○○	72	56	5	51	91.1%	70.8%	1	1
7	○○○	53	24	23	1	4.2%	1.9%	1	1
8	○○○	54	11	0	11	100.0%	20.4%	1	1
9	○○○	76	46	19	27	58.7%	35.5%	1	1
10	○○○	68	17	0	17	100.0%	25.0%	1	1
11	○○○	71	6	0	6	100.0%	8.5%	1	1
12	○○○	63	48	34	14	29.2%	22.2%	1	1
13	○○○	48	27	16	11	40.7%	22.9%	1	1
14	○○○	56	6	0	6	100.0%	10.7%	1	1
15	○○○	59	11	0	11	100.0%	18.6%	1	1
16	○○○	56	5	1	4	80.0%	7.1%	1	1
17	○○○	73	13	11	2	15.4%	2.7%	1	1
18	○○○	34	23	0	23	100.0%	67.6%	1	1
19	○○○	83	44	29	15	34.1%	18.1%	1	1
20	○○○	77	23	5	18	78.3%	23.4%	1	1
21	○○○	54	49	37	12	24.5%	22.2%	1	1
22	○○○	60	47	17	30	63.8%	50.0%	1	1
23	○○○	77	30	8	22	73.3%	28.6%	1	1
24	○○○	33	33	32	1	3.0%	3.0%	1	0
25	○○○	54	30	23	7	23.3%	13.0%	1	1
26	○○○	54	5	0	5	100.0%	9.3%	1	1
27	○○○	59	23	13	10	43.5%	16.9%	1	1
28	○○○	60	49	3	46	93.9%	76.7%	1	1
29	○○○	57	54	34	20	37.0%	35.1%	1	1
30	○○○	47	4	0	4	100.0%	8.5%	1	1
31	○○○	52	22	13	9	40.9%	17.3%	1	1
32	○○○	247	27	0	27	100.0%	10.9%	1	1
33	○○○	281	13	0	13	100.0%	4.6%	1	1
34	○○○	40	-	-	-	비대상시설	-	1	0

\* 출처: 2017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사전절차 미이행 문제

- `18년 증액된 예산 가운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을 위한(예산과목 민간위탁금)으로 총 13억 5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는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 플랜’의 후속조치로써, 심리·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경계선 및 학교부적응 아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전문적 개입 치료를 위해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설명함.
- 이는 앞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의 설치·운영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보여짐.
- 다만, 이 같은 긍정적 취지와 별개로 동 사무는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게 될 신규사무인데도, 예산편성 전 의회에 민간위탁 사무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번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바<sup>35)</sup>, 이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 11) ‘내 손 안 장남감’ 사업 (주민참여 사업)

<sup>35)</sup> 동 사무 관련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만큼 만약 금번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에 이어질 민간위탁동의안 절차는 무의미해진다고 할 것인바, 신규 민간위탁 동의의 절차는 예산편성 이전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기존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담당부서의 '부적정' 의견이 전면 무시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문제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내 손 안 장남감' 사업은 장남감 대여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 된 것으로, 2018년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2천5백만 원임.

〈표 82. '내 손 안 장남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최종예산 (A)		(B-A)	(B-A)*100/A
계	(x-) 0	(x-) 0	(x-) 125,000	(x-) 125,00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0	(x-) 0	(x-) 125,000	(x-) 125,000	(x-) 0

###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동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유형 가운데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장남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하지만, ‘장난감 대여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시 육아 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대여소 1개소 : 2호선 을지로입구역사 내)와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대여소 57개소)의 주요 서비스의 하나임<sup>36)</sup>.

-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에는 37,317건, 2016년에는 44,615건, 2017년 9월말에는 37,554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짐.

<표 83. 장난감 대여 관련 사업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시행처	최근 3년간 주요 성과	관련예산('17년)
서울시육아종합 지원센터 (녹색장난감도서관 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개시 : 2001.12.14.</li> <li>○ 보유장난감 수 : 4,568점</li> <li>○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 37,317건</li> <li>- '16년 : 44,615건</li> <li>- '17년 : 37,554건(9월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센터 총 지원액 11억 5천만원 중</li> <li>○ 장난감 대여 관련 1억 7천만원</li> </ul>
25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총 57개소)	자치구별 장난감도서관현황 불 임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개센터 총 지원액 38억 2천만원 중 (장난감 대여 관련 사업비 편성되었음)</li> </ul>

○ ‘장난감 대여’를 위한 동 사업의 성격만으로 보자면 기존의 유사·중복 사업을 확장 시킨다는 점에서는 굳이 별도의 예산항목을 갖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기존 사업과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36) 서울시 사업명칭 :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

## ■ 담당부서의 '부적정' 의견이 전면 무시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문제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동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담당부서(보육담당관)에서는 동 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사업이 갖는 이상적 취지만을 고려하고 실제 현장의 수요가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에 기반 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동 사업의 주민참여 제안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 사업과 다르게 장난감 대여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 등 자치구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장난감 대여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바, 이 경우 상기 편성된 1억 2천5백만 원으로 향후 얼마나 기존 사업과 차별성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가 운영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장난감 대여를 위해 마련해 놓은 각종의 장난감들을 오직 한해 만 사용하고 말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 12)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사업 (주민참여 사업)

###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타 자치구 지역아동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

###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주민참여예산<sup>37)</sup>으로 신규편성된 것으로, 양천구에서 신청된 ‘지역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임.
- 2018년 편성된 예산은 총 9,450만 원 임.

〈표 84.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0	(x-) 94,500	(x-) 94,50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0	(x-) 0	(x-) 94,500	(x-) 94,500	(x-) 0

### ■ 타 자치구 지역아동센터들과의 형평성 문제

37)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은 크게 ①시민참여형 ②지역참여형 ③시정협치형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지역참여형 사업’은 자치구의 심사를 통해 서울시로 신청된 것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자치구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형태로 운용됨

- 서울시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양천구 관내 지역아동복지 센터에 교육용품, 생활용품, 급식용품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집행 하겠다는 계획임.
- 이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공간 운영 문제 등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의 교육환경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 그 긍정적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하지만, 2017년(6월) 현재 서울시 관내 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총 427여개소로, 이들의 83%가 여전히 소규모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비단 특정 자치구 소관 지역아동 센터에만 국한되는 어려움은 아니라 할 것인바,
- 이처럼 동 사업과 같이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특정 자치구 관 내 지역아동센터만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 자 치구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3.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이 운영 중임.
- 2018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7,744만 원이고,
  - 2018회계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 3,683만 원,
  - 지출은 9억 5,000만 원이며,
  -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6,4274만 임.

<표 85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천원)

'17년도말 조성액 <sup>㉑</sup>	'18년도 조성계획			'18년도말 조성액 <sup>㉑</sup> = <sup>㉑</sup> + <sup>㉒</sup>
	수입 <sup>㉒</sup>	지출 <sup>㉓</sup>	증감 <sup>㉒</sup> = <sup>㉒</sup> - <sup>㉓</sup>	
24,077,446	936,833	950,000	△13,167	24,064,279

○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 총액 11억 1,427만 원은 전년대비 6,826만 원이 감액(△5.7%)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이자수입(7,203만 원)이 감소 되었기 때문임.
-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일반회계 전입금(53.8%), 이자수입 30.2%, 예치금회수(16%)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83.4%)’와 예치금(14.9%)에 지출 할 계획 임.

<표 86. 최근 5년간 부서별 민간이전 경비 예산 현황 >

(단위: 천원)

항 목	`17년 수입액	`18년 수입액			`18년 수입대비율
		수입액	증 감	증감율	
합계	1,182,540	1,114,279	△68,261	△5.7%	100%
예치금회수 (이월금)	173,668	177,446	3,778	2.1%	16%
이자수입	408,872	336,833	△72,039	△17.6%	30.2%
기타회계 전입금	600,000	600,000	-	-	53.8%

<표 87. 2018회계연도 성평등기금 지출 계획 >

(단위: 천원)

항 목	'17년 지출액	'18년 지출액			'18년 지출 대비율
		지출액	증감	증감율	
합계	1,182,540	1,114,279	△68,261	△5.7%	100%
고유목적사업비 (공모사업추진)	1,030,000	930,000	△100,000	△9.7%	83.4%
기본경비	20,000	20,000	-	-	1.7%
예치금	132,540	164,279	31,739	4%	14.9%

○ 2018년 공모사업 추진 사업의 구체적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비(공모사업추진)로 편성된 9억 3,000만 원 가운데 9억 원은 공모사업추진(50개 내외 단체 \* 20,000천원 내외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고, 3,000만원은 공모사업 평가운영비 등의 용도로 편성됨.

<표 88. '공모사업 추진'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	2017예산액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	(B-A)*100/A
계	(x-) 891,449	(x-) 1,030,000	(x-) 930,000	(x-) △100,000	(x-) △9.7
사무관리비	(x-) 30,000	(x-) 30,000	(x-) 30,000	(x-)	(x-)
민간경상 사업보조	(x-) 861,449	(x-) 1,000,000	(x-) 900,000	(x-) △100,000	(x-) △9.7

## 나. 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 1)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 짐.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 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 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 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17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 을 실시하고 있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54개 단체에 총 8억 4,340만 원을 지원(1개소당 최저 지원액 180만원, 최고지원액 3,300만 원, 평균 1,562만 원 지원)하였음.

<표 89 . 연도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운영 현황표>

(단위: 천원)

연도	예산총액	지원액	공모 단체 수	지원 (선정) 단체 수	최저 지원액	최고 지원액	1단체당 평균 지원금액
2012	3,070,179	1,779,270	260	109	3,712	60,000	16,324
2013	1,277,007	814,469	167	69	4,515	22,000	11,804
2014	1,471,580	996,771	144	74	4,488	25,000	13,470
2015	829,429	585,646	152	44	4,000	30,000	13,310
2016	1,049,449	695,400	104	44	4,400	35,000	15,804
2017	1,182,540	843,400	91	54	1,800	33,000	15,625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기금운용재원 안정성 확보 필요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함.
- 그러나 위의 <표 90>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전체 운용기금의 51%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금에서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 더욱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재원은 그동안 2012년 10억 원, 2014년 5억 원, 2016년 3억 원, 2017년 6억 원, 2018년 6억 원으로 꾸준하게 전입되어 온 바, 동 기금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90. 연도별 기금 수입액 현황 >

(단위: 천원)

구분	계	전입금(출연금)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
2012년	3,035,959	1,000,000	1,068,983	966,976
2013년	1,221,213	0	484,830	736,383
2014년	1,506,684	500,000	371,450	635,234
2015년	843,909	0	328,387	515,522
2016년	1,049,449	300,000	194,534	554,915
2017년	1,182,540	600,000	173,668	408,872
2018년	1,114,279	600,000	177,446	336,833

## 【별첨자료1: 서울시 자치구 장난감도서관 운영 현황】

(’17. 9월말 현재)

연번	자치구	운영명칭	주소	대여가능품목			면적 (㎡)
				장난감	도서	보유수	
1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중구 을지로 1가 을지로입구역내	0	0	4,568	182.5
2	종로구	명륜동장난감도서관	성균관로1길 6-3	0	0	1,965	50.5
3		창신동장난감도서관	창신5길 65-4	0	0	1,567	30.4
4	중구	키즈토이(신당점)	다산로 32길 5	0		1,452	84.5
5		키즈토이(중림점)	서소문로 6길 16	0		500	62
6	용산구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 서빙고동 창업지원센터 1층	0	0	4,736	282.8
7	성동구	무지개장난감세상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0	0	2,949	129
8		왕십리장난감세상	난계로 160	0		345	172.2
9		금호장난감세상	무수막 18길 1	0		246	46.6
10	광진구	재미씨앗	동일로 56가길 31, 3층	0		897	10
11	동대문구	느티나무 장난감방 /느티나무 책방	황물로 62	0	0	4,403	70.2
12		느티나무 장난감누리/ 느티나무 도서누리	약령시로 7길 19	0	0	3,225	85.1
13	중랑구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면목점)	동일로 591	0		2,292	202
14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 (중랑점)	중랑역로 3길 28	0		3,133	99
15	성북구	장난감이좋아·책이좋아	오패산로 10길 19	0	0	10,842	1397.7
16		sb장난감도서관	보문로 168 성북구청 1층	0		1,022	117.7
17		장난감놀이터	지봉로 24길 26	0		567	25.9
18	강북구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인수봉로 66길 9 2층	0	0	8,924	163
19	도봉구	장난감나라	방학로 12길 28	0		2,258	118.8
20		독서사랑방	방학로 12길 28		0	9,292	103.7
21		장난감나눔이	우이천로 4길 24-5	0		964	68.7
22		도서나눔이	우이천로 4길 24-5		0	3,789	46.4
23	노원구	놀이야띠 상계점	덕릉로859 상계3,4동 주민센터3층	0	0	5,660	106.3
24		놀이야띠 월계점	월계로378 월계헬스케어센터3층	0	0	2,864	65
25		놀이야띠 공릉점	공릉로 166-1 공릉보건지소 4층	0	0	1,539	74
26	은평	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오릉로 25가길 4	0	0	874	109.5
27		라운장난감나라	은평로 195	0		880	83.6
28	서대문구	대여사업	연희로290	0	0	3,691	16.5
29	마포구	도화장난감대여점	도화4길53	0	0	3,792	188
30		망원장난감대여점	포은로 6길 10 망원 제1동주민센터 1층	0	0	3,712	149
31	양천구	해누리장난감도서관	목동로81해누리타운3층	0	0	2,847	26.4

32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중앙로 32길 1 신정1동주민센터 4층	0	0	854	172
33		해맞이장난감도서관	지양로 37 (구)신월청소년독서실 1층	0	0	1,309	159.6
34	강서구	키득키득놀이감터	수명로2길 50(내발산동)	0	0	1,793	101
35	구로구	구로꿈나무장난감나라 (구로지점)	구로동로 26길 54	0		2,838	638
36		구로꿈나무장난감나라 (개봉지점)	경인로319	0		2,854	476
37	금천구	장난감나라 시흥점	시흥대로73길 70, 지하1층	0	0	2,828	368
38		장난감나라 독산점	시흥대로123길 11, 4층	0	0	867	208
39	영등포	장난감도서관(신길점)	신길로 40길 5	0	0	518	91
40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 (당산1호점)	선유동1로 80	0	0	888	209
41		장난감도서관(당산2호점)	당산로 41가길7 3층	0	0	236	82
42	동작구	로야장난감대여점	매봉로37 동작상도 국주도서관 내 1층	0		1,731	56.7
43		사당영유아돌보미센터	사당1동 1044-42번지 사당노인종합복지관 3층	0	0	2,038	145.5
44		창의놀이터	여의대방로 36길 11(4층)		0	1,500	287.7
45		신대방영유아돌보미센터	신대방1동 607-115		0	823	132
46	관악구	꿈놀이터	쑥고개로 128, 2층	0	0	2,360	89.1
47		꿈동지	난곡로 78, 1층	0		777	34.78
48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 도서관 신원관	신원로3길 20-3, 2층	0		356	44.5
49	서초구	서초장난감도서관	남부순환로347길 46	0	0	4,132	238.8
50		신반포장난감도서관	신반포로19길 26	0	0	2,030	132.9
51	강남구	개포육아종합지원센터	영동대로3길9, 3층	0	0	2,232	183.2
52		논현육아종합지원센터	학동로43길17, 2층	0	0	1,782	152.7
53		대치육아종합지원센터	영동대로65길11, 4층	0	0	4,069	320.7
54		도곡육아종합지원센터	도곡로18길57, 1층	0		135	208.2
55		삼성육아종합지원센터	봉은사로82길23, 3층		0	1,071	206.7
56	송파구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놀이감 대여실	중대로 235,3층(오금동)	0		2,021	101.9
57	강동구	동동레코텍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성내로6길 16 (성내동)	0	0	3,431	193.6
58		동동레코텍 (강동구육아누리도서관)	상암로 168, 2층	0	0	6,023	49.8

【별첨자료 2】 저출산 대응 사업 2018년 예산 편성 내역

□ 16개 사업 27,829 백만원

연도	사업명	추진부서	소요예산 (백만원)	예산반영 (백만원)
	총 계		66,479	27,829
1	신혼부부 및 자녀육아세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 시범사업	주택정책과	2,300	2,300
2	육아지원 전용 주거단지 조성(Child-care Housing)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주택정책과	300	-
3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매매·임차 가이드북 제공 및 교육	주택정책과	100	100
4	출산·육아 친화적 고용·노동환경 조성	알자리정책담당관	540	600
5	「육아휴직-청년인턴 매칭」 지원 시스템 운영	알자리정책담당관	1,560	1,560
6	자녀 성장단계별 육아보육 지원을 위한 뉴딜일자리 발굴	알자리정책담당관	982	-
7	여성적합 특화 일자리 발굴	알자리정책담당관	982	982
8	「생계형 알바 탈출」 청년일자리 지원	알자리정책담당관	240	-
9	서울시 출산 가정 임신·출산 지원비용 확대	건강증진과	15,107	-
10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간호사 확대	건강증진과	1,600	1,600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건강증진과	26,040	11,433
12	서울형 남녀 건강 출산 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강증진과	300	300
13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가족담당관	8,550	4,275
14	자녀 안심 등하원서비스 제공	보행정책과	2,534	1,624
15	아동 동반 부모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정보 DB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500	-
16	'아이 함께 키워요' 캠페인 진행	가족담당관	1,000	500
17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일가족양립 지원	가족담당관	956	336
18	10대 청소년 한부모 출산 및 양육 지원	가족담당관	1,546	877
19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서비스 확대	외국인문화담당관	500	500
20	다문화가족 출산 후 방문 멘토링서비스 제공	외국인문화담당관	350	350
21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외국인문화담당관	492	492